

봉강 정해룡의 사적 관계다.

먼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자.

1919년 3·1 운동 이후 일제는 이른바 문화정치로 정책방향을 선회하면서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에 조선에서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에 이른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일제가 나선 적은 없었고, 민간 차원에서만 대학설립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었다. 조선의 교육수준이 대학을 가질 정도로 성숙되었으니 대학교육을 통해 조선인의 손으로 지도적 인재를 길러냄으로써 민족 정신을 높이고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긍지를 주기 위해 이른바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당시 동아일보는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민중문화운동의 선구', '최초의 가장 큰 민중운동' 등으로 높이 평가했는데(국사편찬위원회 1981, 80), 동아일보에 봉강 정해룡 관련 기사가 실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데,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동아일보가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원과 관심에 대해 특별한 보도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과 정해룡과 같은 깨어있는 조선인 지주들은 민립대학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민족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민족독립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이 이후 보성전문학교 이전과 도서관 건립에 대한 금전 지원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김성수와 정해룡의 사적 관계다. 물론 김성수와 정해룡이 친분관계를 유지했고, 이들이 서로 만나거나 함께 활동을 했던 공식적인 기록을 찾을 수는 없다. 다만 정해룡 후손들의 전언을 통해 김성수와 정해룡이 친분이 있었고, 김성수가 정해룡의 자택을 방문한 적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뿐이다. 문서상으로 김성수와 정해룡의 친분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만, 정해룡이 보성전문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던 동기가 단순히 민립대학 설립이라든지 보성전문 이전 및 운영이라는 추상적 대의에 찬동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너무 나이브한 분석이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는 없지만 김성수와의 사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후손들의 주장에 개연성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국지사 봉강 정해룡 선생 추모비 건립 취지문」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정해룡과 김성수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1935년이다. 김성수는 1932년 3월 26일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고, 6월 4일에 제10대 교장으로 취임한 후였다.

보성전문학교는 1905년 보성전문학교로 출발하였으며, 일제 강점 이후인 1915년에는 보성법률상업학교로 격하되었고, 1922년 보성전문학교로 다시 개교하였다. 이후 보성전문학교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1944년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고려대학교 70년사 편집실 1976, 67-77). 김성수는 신설동에 위치해 있던 보성전문학교의 교사 이전을 추진하여 1933년 5월 현재의 안암동 소재 62,000여 평의 토지를 재단법인 중앙학원의 명의로 매입했다. 그 해 9월 1일부터 교사 신축이 시작되었는데, 1934년 9월 중순 완공되었다(고려대학교 70년사 편집실 1976, 50).

교사 이전과 함께 김성수는 보성전문학교 제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은 도서관

건물 신축을 추진한다. 물론 교사 이전 이전에도 보성전문학교 도서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의 개관연도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1904년 교과서 및 참고서 삼만 여종을 구입하여 일본에서 귀국한 이용익이 1906년 교사를 이전하면서 보성사(普成社)를 부설하여 교수용(教授用)도서를 출판하였고, 이와 함께 보성관(普成館)을 두어 참고서 삼만 여부를 소장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고려대학교 70년사 편집실 1976, 51). 이 기록으로 보아 보성관이 당시 보성전문학교의 도서관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²⁾

1935년 보성전문학교는 개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은 기부금으로 도서관을 착공하여 1937년 석조(石造) 3층(석탑 5층) 1동(棟) 총건평 943평으로 된 건물을 준공하여 개관하였다. 도서관이 개관한 1937년부터 보성전문학교의 사무분장에 부속도서관이 있으며, 이후 부속기관으로 도서관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을 개관하는데 소용될 비용은 건립비 10만원과 도서구입비 10만원이 계획되었으나, 실제로는 22만원이 소요되었다. 신축된 도서관건물은 보성전문학교에서 본관(1,144평)에 버금할 정도의 규모로, 당시 보성전문학교 건물은 본관과 도서관 그리고 기관실과 숙직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던 부속사(附屬舍) 2동(32평, 22평)만이 있어, 당시 보성전문학교가 도서관에 기울인 노력을 엿볼 수 있다(리창교 1966, 88-89).

김성수는 보성전문학교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을 통해 조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보성전문학교 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민모금운동 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위해 행정적으로 필요했던 조선총독부의 허가도 어렵지 않게 받아냈다. 고려대학교 70년사 편집실의 자료에 따르면, 보성전문학교 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민모금운동의 대표는 윤치호가 맡았고, 김병로와 김성수 등 10여명이 상임실무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모금운동의 구호가 이색적인데, <우리 학교와 우리 힘의 보전>이 모금운동의 구호였다. 한 학교의 도서관 건립이 곧 민족의 힘을 보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점은 식민지라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김성수는 도서관 건립 자금 모금을 위해 전국의 주요 인사와 유자들을 만나 모금운동의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당위를 역설했을 것이고, 이러한 역사적·민족적 필요성에 공감한 주요 인사들이 자금 모금에 동참했을 것이다. 「우국지사 봉강 정해룡 선생 추모비 건립 취지문」의 내용처럼 1935년 정해룡과 김성수가 만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었음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종희, 정길상 등 정해룡 집안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해룡은 김성수의 자금지원 요청에 매우 호의적이었고, 적극적인 후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정해룡의 후원은 실제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성전문학교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정해룡의 후원은 1936년 7월 30일자 「매일신보」에서 처음 확인된다. 이 기사에서 정해룡이 600원을 후원했음을 알 수 있다. 1940년 5월 20일자 「매일신보」의 '불원간 준공된 보전도서관 각지 인사의 열렬한 후원으로 기부는 지속 모집'이라는

2) 고려대학교 70년사 편집실의 기록에 따르면, 1925년 당시 보성전문학교는 서무부, 경리부, 학예부, 체육부의 네 개의 부로 조직되었으며, 학예부가 도서출판 및 보관과 관련된 사항을 관할하였고, 도서관 건물 설립을 위한 기금 모금도 이 부서에서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서도 정해룡이 보성전문학교 도서관 건립에 후원했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1938년 1월 15일자 「조선일보」의 '과연 모범적 청년 기대되는 정해룡씨' 제하의 기사에서도 정해룡이 600원을 보성전문학교 도서관 건립에 기부했다는 내용이 소개된다.³⁾

정해룡이 아닌 정해룡의 조부 정각수 명의의 후원에 관한 기사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정각수 명의로 기부하긴 했지만, 당시 정각수는 와병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정해룡이 조부 명의로 기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정길상 구술, 2007. 9. 10.). 재미있는 것은 1937년 6월 10일자 기사의 내용을 보면 정각수의 후원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시 동아일보 보도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성전문교에 2백 원을 희사

보성 정각수씨 특지(特志)

(보성) 전남 보성군 회천면 봉강리에 사는 정각수씨는 과거에 교육 희사금으로 보성전문에 금액을 기부하였었는데, 이번 씨의 임종에 당하여 또 이백 원금을 보성전문에 기부하라고 유언하였다한다.

위의 보도내용에서 확인되듯 정각수 명의의 기부는 두 차례 이루어졌다.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첫 번째 기부는 보성전문학교 도서관 건립 국민모금운동이 시작되고 김성수와 정해룡이 처음 만난 1935년 직후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매일신보」에서 보도했던 정해룡 명의의 600원 외에도 정각수 명의의 기부가 별도로 이루어졌고, 다시 동아일보에 보도된 정각수 명의의 기부금, 그리고 금액을 알 수 없는 정각수 명의의 1차 기부금(1백원 내지 2백원?) 등을 고려하면 정해룡과 정해룡 조부 정각수 명의의 기부금을 모두 합한 금액은 8백원 ~ 1000원 규모였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정종희와 정길상은 정해룡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정종호의 전언을 근거로 후원금 2백원의 출처가 안양읍(安良齋) 2백 두락을 처분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정종희 구술, 2007. 11. 9; 정길상 구술, 2007. 9. 10.). 정각수 명의의 후원금의 출처 및 기부 관련 보도내용은 최정기(1995)의 연구와 이재의(1995)의 취재에서도 확인된다.

보성전문학교 도서관 건립기금 후원은 김성수와 정해룡의 친분을 암시하고, 정해룡의 민족교육 지원활동과 해방 이후 정치활동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해방 직후 정해룡은 보성군 회천면 건준위원회와 보성군 건준위원회 역임하면서도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기 직전이자 미군정이 인천을 통해 한국에 진주하기 직전 송진우, 김성수, 김준연 등의 상해임시정부 지지파들이 결성했던 상록하던 시점에 발족했던 국민대회준비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한다. 심지연의 연구에 따르면(심지연 1986, 145), 이 모임은 송진우, 김성수, 김준연 등 호남세력의 핵심파들

이 시국대책을 전 국민의 총의에 부쳐서 강구하자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결성된 모임이었다고 한다.

정종희나 정길상 등 가족들은 정해룡과 김성수의 인연이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 김성수의 시국강연, 내선일체를 위한 정신교화운동과 일제의 전쟁수행을 경제적인 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전시협력운동단체였던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이사와 참사 역임, 태평양 전쟁 시기 학병 지원 격려 활동 등으로 단절되었다고 주장하지만(정종희 구술, 2007. 11. 9; 정길상 구술, 2007. 9. 10.), 1945년 9월 7일 김성수 등이 주도한 국민대회준비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정해룡이 김성수의 친일의혹 행적에 대해 후손들의 주장처럼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는지는 몰라도 정치적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친일행적이나 이념적 거리에 매우 탄력적으로 대응했음을 알 수 있다.

4. 개량서당으로서의 양정원의 설립과 운영

봉강 정해룡의 민족교육 활동의 핵심은 양정원의 설립과 운영이다. 보성전문학교에 거액을 희사했던 봉강의 활동은 매우 주목해야 할 활동임에 틀림없지만, 본인이 직접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것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만큼 양정원의 설립과 운영은 정해룡의 일제 강점기 활동 중 가장 핵심이고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양정원의 설립과 운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성전문학교에 대한 지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시대상황과 정해룡이 직면했던 현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해룡이 양정원을 설립하면서 당시의 상황은 민족교육에 대한 사명과 의지를 갖고 있던 이들에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일제가 「사립학교령」을 제정하여 당시 5천여 개에 이르던 사립학교들을 탄압하여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게 되자 새롭게 부각된 민족교육운동이 지하민족교육이었다. 각종 야학과 학술강습회를 통한 민중교육이 이 시기 주요 교육 형태였다. 그러나 총독부가 지하 민족교육을 탄압하기 위해 「사설학술강습회에 관한 건」이라는 법령을 제정하자 1920년대 말 이후에는 지하 민족교육 또한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제의 지속적인 민족교육 탄압 속에서 새로운 독파구로 찾아낸 것이 서당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족교육자들은 전통의 서당과는 조금 다른 개량서당의 형태를 만들어서 근대적인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당시의 상황을 소개한 아래의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조선일보의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조선일보, 1938. 1. 15). "대인(對人)에 온공(溫恭)을 위주로 하며 빈민구제에 대한 일반의 청송이 많고 일찍 사회사업에 뜻을 두어 보전(보성전문)에 600원 희사를 비롯하여 교육비 기타에 희사한 금액이 거액에 달하고 특히 장래 사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매년 다액의 금을 적립하기에 노력"

1926년도 평북 용천군 양하면 신서동 기독교회에서는 무산아동과 연령초과로 보통학교에 입학치 못하는 학생을 위하여 작년 추기(秋期)에 강습소를 설립하고...도 당국에서는 사립학교 이외 강습소는 특수한 사정이외에는 인가를 허가할 수 없다고 인가원서를 반각(返却)하였는데 기독교 측에서는 부득이 개량서당으로라도 경영할지라 하며 제반 내용을 전보다 더 충실히 하고 보통학교정도와 같이 유감없이 학과를 교수하리라 한다(동아일보, 1926. 7. 12. 4면).

1932년도 경기도 안성국 일죽면 화곡리에 유자들의 노력으로 공동서당을 설립-농촌문맹퇴치에 활동 중 학원계획 불인가로-청년유지 30여명이 단결하여 농촌문맹을 퇴치코자 원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13년간 자금을 축적하여 금춘(今春)에는 건평 21평의 교실을 건축하고 연봉 180원의 유급교원 1명까지 고빙(雇聘)하여 대대적으로 농촌자제들의 문맹을 퇴치코자 대활동을 하든바 당국으로부터 간섭을 받을 뿐 아니라 허가조차 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10여 년간 활동하든 학원설치는 수포로 돌아가고 개량서당이라는 명칭 하에 10여 아동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동아일보, 1932. 10. 25. 7면).

서당에 대해서는 종래 경무국에서는 취체를 엄중히 하여왔으나 작금에 와서는 그다지 내용이 불온한 것도 없고 또 초등교육의 보급을 위하여 그 존재가 필요하므로 학무국에서는 오히려 장려 조장하려는 터인데 어찌되었던 여러 가지 곤난과 싸워가면서 그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서당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조와 지도하여서 소학교로 승격시키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긴절(緊切)하고 일방 이서당의 존재는 조선의 일반향학열이 얼마나 자심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한다(동아일보, 1938. 8. 3. 3면).

이상의 내용을 볼 때 개량서당 국민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초등교육기관이었고, 사립학교나 강습회의 변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영은 유자들의 협동, 학계, 부락공동 또는 기독교 단체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어떤 개량서당들은 애학까지도 실시했는데, 형태와 운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개량서당은 분명히 민족을 위하여 민중자신의 사각과 사력으로 이루어진 민족의 것임에 틀림없다. 개량서당은 그 설립목적과 교육내용이 초등의 사립학교나 서설강습소 및 약학과 거의 같았고, 당시의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일제의 식민지교육에 맞서 민족적 교육을 할 수 있는 형태는 개량서당이 거의 유일했다.

「조선일보」 1939년 9월 1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정해룡씨 특지(特志)

(보성) 보성군 회천면 정해룡씨는 전부터 각 방면을 통하여 사회적 공헌이 적지 않았거니와 이번에 또 다시 생각한바 있어서 자기 단독 경영으로 사립학교를 세우고자 인가원을 제출하였던 바 인가가 되지 않아 목적을 변경하여 양정원이라는 고아원을 경영코자 밖금 다대한 경비를 들여 건물을 신축 중인바 오는 시월 경에는 준공될 모양으로 준공만 되면 즉시 개원하리라 한다.

위의 기사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양정원의 설립·운영자 논란을 불식시킬 결정적 기사이기도 하지만, 우선 여기서는 양정원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에서 인용하고자 한다.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 정해룡은 본인의 책임 하에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육성하고자 인가원을 제출했으나 인가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 정해룡만 겪었던 문제가 아니라 위에 인용된 동아일보의 기사내용처럼 민족교육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했던 모든 사립학교 설립자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했던 문제다.

다만, 서당에 대해서는 일제가 초기 개량서당의 운영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고 운영을 감시했으나 개량서당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초보적이고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며, 식민지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기본적 문자해독 능력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초등교육기관의 대체기관으로 설립·운영을 묵인했고, 개량서당이라는 형태의 교육기관을 통해 한글교육 및 최소한의 민족교육이 이루어졌다.

정해룡이 양정원을 사립학교가 아닌 고아원으로 목적 변경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후 운영은 사실상의 초등교육기관으로서 목적 외 운영을 했던 것이다. 위에 인용된 1926년도 평북 용천군 양하면 신서동 기독교회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굳이 사립학교가 아닌 고아원의 이름을 빌린 개량서당으로라도 운영할지라도 보통학교 수준의 교육은 얼마든지 가능했기 때문이다.

양정원의 이름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정해룡이 설립한 교육기관의 이름이 굳이 '○○학교'가 아니라 '양정원(養正院)'인 것도 고아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양정원의 뜻을 풀면 바르게 키운다는 뜻인데, 고아들을 바르게 키운다는 뜻과 함께 민족교육을 통해 조선 아동들을 바르게 키운다는 의미도 염두에 두고 작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양정원은 정식 허가를 받은 초등교육기관이 아니었던 관계로 당시 전국적으로 유행하던 개량 서당의 운영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해방 이후 회천서국민학교의 전신으로 편입되었던 것도 당시 양정원의 교육수준과 내용, 교육기관의 형태가 초등교육을 담당했던 개량서당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양정원이 개량서당이었음을 확인해주는 문서자료도 있다. 보성군사편집위원회(1995)에서 발간한 『보성군사』의 내용 중 “제1장 교육제도의 변천” 부분의 “제3절 조선시대의 교육” 관련 서술 중 서당의 실태 관련 자료에는 양정원을 서당으로 분류하고 있고, 훈장을 정해룡으로 기록하고 있다(보성군사편집위 1995, 835). 필자가 보기에도 보성군사편집위의 이 자료는 양정원의 성격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이자 분류로 보인다.

양정원의 존속시점을 1945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다른 지역의 개량서당의 존속기한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다.⁴⁾ 개량서당이 해방과 함께 사라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해방과 함께 합법적으로 신학문을 가르치는 조선인을 위한 학교를 자유롭게

4) 물론 회천서국민학교 학교연혁에 따르면 양정원은 1946년까지 존속한다. 회천서국민학교 개교가 1946년 10월 19일자로 인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학사과정이 운영되었던 1947년 봄 이전까지는 양정원의 명맥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양정원의 존속시점과 관련한 진술들은 1945년 무렵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회천서국민학교의 기록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인다.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정원과 같은 개량서당이 존립해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정원 뿐만 아니라 일제 말 전국에 산재했던 개량서당이 설립·운영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 없이 사라져버린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서당의 실태>

所在地	書堂名	最給存續	輩出人員	訓長	備考
회천봉강	양정원	1945		정해룡	

*출처 : 보성군사편집위원회(1995, 835).

다음으로 당시 정해룡이 직면했던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해룡은 회천면의 유력한 지주였지만 한학 등 전통교육을 조부 등으로부터 수학하기는 했지만, 근대적 교육기관에서 신학문을 교육받은 적은 없었다. 따라서 재력을 갖춘 정해룡 본인이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는 있었지만, 직접 운영하기는 힘들었다. 근대적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강생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치거나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무리였을 것이다. 정해룡이 윤윤기를 초빙하여 양정원의 운영을 맡겼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정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학문을 교육받고 실제 학교에서 아동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유능한 교사가 필요했고, 윤윤기가 적임자로 거론되었던 것 같고, 실제 정해룡에 의해 초빙되어 양정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 운영을 담당했다.⁵⁾

당시 정해룡이 직면했던 현실 중 간파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해진의 존재다. 정해진은 정해룡의 친동생이다. 정해룡과 정해진은 형제지간이지만, 삶의 궤적에서 보면 매우 다른 삶의 궤적을 갖고 있다. 정해진이 엘리트 사회주의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정해룡은 중도 민족주의 성향의 삶의 궤적을 갖고 있다. 학력, 사상, 활동 등 모든 측면에서 두 사람의 차이는 컸지만, 둘 사이의 형제애와 신뢰만큼은 돈독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해진은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한 이래 오랫동안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했다. 정종희와 정길상에 따르면(정종희 구술, 2007. 11. 9; 정길상 구술, 2007. 9. 10.), 정해진은 해방 직전에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한 어느 군수공장에 위장 취업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곳에서 김선우와 노동운동을 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인천경찰서에 수감되었고, 정해룡은 두 사람을 석방시키기 위해 많은 돈을 썼다고 한다.⁶⁾ 일본에서 귀국한 이후 해방 직전 인천에서 위장취업하여 노동운동을 하기 전까지 정해진은 봉강과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부인이었던 전예준(田禮峻)과 혼인 신고를 한 시점이 1941년 6월 27일이고, 전예준은 정해진과 같이 거주하면서 양정원 교사로

5) 현재 정해룡 집안과 윤윤기 집안간의 이론바 양정원을 누가 설립했는가의 논란은 역사적 사료나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정해룡이 설립했고, 윤윤기가 운영을 담당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고, 인간적 신뢰관계가 두터워서인지 정해룡은 양정원 뿐만 아니라 보성인쇄소의 운영에도 윤윤기를 참여시켰다.

6) 정해진과 김선우의 관계 그리고 정해룡 지원에 관한 내용은 백형교의 진술에 의한 것이다. 그에 진술에 따르면, “동생 정해진이 해방직전 인천 군수공장에서 김선우와 함께 노동운동을 하다 발각돼 경찰에 연행됐을 때 꽤 많은 돈을 들여 그들 둘을 빼낸 적이 있지요. 봉강이 동생이 학생운동을 할 때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뒷바라지를 했는데 동생의 그런 활동을 귀찮아하기보다 대견스럽게 생각했습니다(이재의 1995, 219)”.

활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사이에 태어난 정국상(丁國相)은 1942년 4월 6일 출생 신고가 되었고, 정훈상(丁勳相)과 정명숙(丁明淑)은 1947년 6월 30일에 출생신고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로 볼 때 무상교육을 천명했던 양정원의 설립이나 빈민구제, 노비 해방 등은 정해룡의 동생 정해진의 이념적 성향이 투영된 조치들로서 정해진의 조언이 정해룡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정해진의 처 전예준이 양정원의 교사로 활동했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양정원의 교과과정이나 교육내용에도 정해진이 배후에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자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제 양정원이 어떤 교육기관이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전라남도 보성교육청(2000)의 자료에 따르면, 양정원의 건립 부지는 마을 입구에 위치했던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던 봉강리 260번지와 630~640번지 일대로 선정되었다. 이곳의 토지는 대체로 정해룡 또는 정해룡 가문이 소유했으나, 타인이 소유한 토지는 매입했다. 이렇게 조성된 양정원의 터는 약 3,000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전라남도 보성교육청 2000, 459).

양정원의 설립 당시에 관한 기록과 자료는 많지 않다. 그동안 양정원에 관한 내용은 거의 대부분 관련자의 증언이나 구전 또는 이를 받아 기록한 자료 그리고 졸업생들의 사진 몇 장이 전부였다. 이처럼 양정원에 대한 기록이 설립자나 일부 졸업생들의 구술 외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즉 양정원과 같은 개량서당 형태의 교육제도가 갖는 임시성과 임의성은 양정원에 대한 관심과 자료의 부족을 가져온 1차적 원인이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양정원은 고아원으로 위장 개원하여 마을 아동들을 포함한 교육 수요자들에게 초등교육과정에 근접한 기초수준의 교육을 담당하던 기관이었다. 양정원이 위장 교육기관이라는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일제도 조선인에 대한 초등교육 수요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립학교 사정을 고려하여 양정원과 같은 개량서당의 목적 외 활동을 체제를 위협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 한 목인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양정원 설립과 운영이 면 소재지도 아닌 마을에서 운영되는 교육사업이었던 점, 정부와 관이 아닌 민간에서 주관했던 점, 일제의 통제와 동원의 극단화되고 있는 전쟁 국면에 진행되었다는 점, 해방 이후 오래지 않아 양정원이 폐교되었고 회천서국민학교로 편입되었다는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전국에 산재했던 대부분의 개량서당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이유도 양정원과 같다. 아니 양정원에 대한 기록이 부족한 이유는 당시 전국의 개량서당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이유와 같다. 양정원은 공적 교육기관의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인가받지 못한 기관에 의해 실시된 임시방편적이고 임의적인 교육서비스기관이었고, 해방 이후 공적 교육기관을 통한 공적 교육서비스의 기회가 보장되면서 양정원을 비롯한 개량서당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소멸되었다. 양정원이 1946년 회천서국민학교로 편입되는 과정은 선경식(2007)의 주장처럼 일제의 탄압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교육제도로서의 사회적 필요성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정원에 대한 기록의 부재 혹은 부족은 양정원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유발했다.

갈등의 핵심은 양정원을 누가 설립했고, 설립 후 운영자금을 누가 지원했는가에 있다. 양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자 가족들의 구술 혹은 진술들은 유리한 기억들만 자의적으로 재구성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의 논의에서는 배제한다. 그렇지 만 철저히 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확인 가능한 문서자료에 의존해 살펴보면 양정원의 설립자는 정해룡이다.

위에서 인용한 「조선일보」 1939년 9월 1일자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보성전문학교 도서관 건립 후원금을 내는 등 민족교육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던 정해룡이 단독 경영으로 사립학교를 세우고자 인가원을 제출했겠지만, 당시 조선교육령이나 조선통독부의 교육정책 하에서는 조선인에 의한 사립학교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선경식(2007)의 책에 언급된 것처럼 양정원의 원훈(院訓)이 “문맹퇴치, 빈곤타파, 부랑아 수용, 황국신민화”(선경식 2007, 134)였던 것은 양정원의 성격(부랑아 수용)과 시대 상황(황국신민화)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938년부터 이미 조선어사용과 교육이 금지된 상황에서 중일전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개원한 양정원에서의 민족교육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수준이 얼마나 제한적이었겠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해룡은 양정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을 부담했다. 양정원의 설립 시점을 두고, 그동안 1935년과 1938년 등 여러 주장들이 있었으나,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양정원은 1939년에는 교사 신축이 진행 중이었고, 개교한 시점은 1940년 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보성군사』에는 양정원이 1935년 설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보성군사편찬위원회 1995, 835), 이는 집필자들이 일제시대 자료 발굴보다는 증언이나 이미 유통되던 신뢰할 수 없는 2차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양정원이 고아원 명목으로 1939년 인가·설립되어 1940년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⁷⁾

또한 양정원은 학교를 설립한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는데,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밟아 진행되었다. 그러나 양정원에 대한 학교 인가 요청이 반려됨에 따라, 고아원으로 변경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양정원은 공식적으로는 고아원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당시 전국적으로 유행하던 것처럼 개량서당의 형태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의 교육을 관리하던 기관에서는 양정원을 고아원이나 개량서당의 형태로 인식하고 관리했던 것이다.

선경식(2007)에 따르면, 양정원은 교무실과 2칸의 교실로 구성된 교사(校舍)와 운동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정확한 규모를 확인할 자료는 없다. 다만 보성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정해룡이 양정원 설립을 위해 조성한 땅이 3000평 정도였으니 교실과 운동장 기타 관사 및 숙직실 역할의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정원은 마을 입구에 위치했던 관계로 마을을 들고 나는 사람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양정원 뒤편 동산에는 일제 말기 방공 훈련을 대비하여 판 것으로 추정되는 땅굴이

7) 이 점은 선경식도 동일하다. 선경식은 양정원이 제1기 입학생을 맞이한 시기를 1940년 4월로 기록하고 있다. (선경식 2007, 142).

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년기에 이 땅굴에서 놀기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입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흔적이 남아 있다. 땅굴의 존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는 양정원은 관할 교육행정기관의 ‘공적 통제’ 하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일제의 방공계획에 포함된 기관이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달리 말하면 양정원은 선경식이 기술하는 것처럼 민족독립교육의 ‘해방구’가 아니었고, 일제가 허용한 한계를 넘어서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관할구’였을 가능성 이 더 높다.

선경식은 양정원 학생들의 다수는 보성이 거주지였으나, 장흥과 영암과 같은 인근 지역에서 그리고 더 멀리는 완도와 강진 등에서도 찾아왔다고 한다. 양정원에 재학했던 학생들의 수는 일정하지 않았다. 적계는 300명에서 많게는 500명에 이르기까지 여러 얘기들이 있으나, 현존하는 사진으로 보면 한 학년 당 100명을 약간 상회했고, 상시적으로 등교했던 학생은 300여 명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정원의 선생님들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들은 10여 명에 이른다. 먼저 양정원에서 교장의 직위를 갖고 있던 사람은 윤윤기였다. 윤윤기는 1900년에 출생했으므로, 정해룡보다 13살이 많았다. 두 사람은 회천면의 소재지인 울포리에서 만나 양정원의 설립에 의견을 같이 하고, 공동으로 추진했다. 윤윤기는 1925년부터 교사로 근무했으며, 1938년에는 천포간이학교에서 보성보통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윤윤기는 일제가 주는 은급을 거부하기 위해 1939년에 사직서를 제출했던 민족과 항일 의식이 강했던 인물이었다. 윤윤기의 사직서는 정해룡을 비롯하여 일본인 한학자로 보성을내에서 고교약방을 경영했던 다카하시 등이 힘을 모아 방법을 강구함으로서 성사되었다고 한다. 다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등으로 항상 분주했던 정해룡은 윤윤기에게 양정원의 설립에 관한 실무와 운영을 부탁했다(최정기 1995, 129).

선경식(2007)에 따르면, 양정원의 경영에는 윤윤기의 재산도 일부 포함되었던 것이라는 진술이 소개되어 있다. 양정원의 설립과 인가도 어려운 문제였으나, 개교한 이후에는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운영비의 마련이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양정원의 교육비가 무료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책과 학용품 등도 무상으로 공급했다. 따라서 양정원의 관리와 운영에는 막대한 비용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었다.

정해룡은 는 8~10마지기의 곡수를 양정원의 운영비 둑으로 할당했고, 상황이 발생할 때는 현금을 지원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지만, 윤윤기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비를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윤기는 민간요법에 의한 치료에 조회가 깊어서 지역민들을 치료해주었다. 양정원 운영비를 바탕으로 치료비는 무료였으나, 환자와 가족들이 고마움을 표하기도 하여 이 돈을 운영비로 사용했다. 봉강이 정치에 치우쳐 미처 손을 못 쓸 시에는 이외에도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강진에 가서 산판을 벌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했다.

또한 양정원에는 윤윤기 외에 다른 선생님들도 있었다. 1942년에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김양중, 순천농업학교를 졸업한 문동환, 송정리공업학교를 졸업한 손석종, 일본에서 유학한 변영섭 그리고 정해균, 변기수, 정중섭 등이 당시 학생들이 기억하는 선생님들이다(이재의 1995, 118). 뿐만 아니라 정해진과 그의 부인인 전예준도 선생

님으로 활동했다. 앞서 잠시 언급했는데, 전예준은 이화여자전문학교를 졸업한 당시 식민지 조선의 최고 여성 엘리트였다. 전예준이 선생님을 했다는 것은 정해진이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봉강리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생님들 가운데 일부와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일부 선생님들은 한국전쟁을 전후한 정치·사회적 혼란기에 유명을 달리했거나 행방불명되었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양정원을 거쳐 간 많은 학생들도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정원은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무렵에 개교했고, 개교한지 2년 여 만에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다. 이는 정해룡에게도 심각한 위기로 다가왔을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양정원을 운영하는 상황과 조건이 매우 어렵고 심각한 환경이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긴급한 문제가 정해룡을 압박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무상교육을 실시했던 양정원의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전시체제 하에서 식민지 체제에 위협이 되거나 배치되는 교육활동에 대한 일제의 간섭과 감시, 통제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던 상황 하에서 민족교육을 수행하는 문제였다.

양정원에서 수학했던 졸업생들은 일제에 의한 양정원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조선어 교육을 비롯하여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회고한다. 이는 선생님들의 면면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 때 양정원에서 교사를 했던 백형교에 따르면,⁸⁾ 양정원에는 일제 경찰의 출입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있었고, 빈번하게 방문했다고 한다. 이는 일제가 양정원의 교육활동에 개입하고 통제 하에 두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양정원이 언제까지 운영되었는가에 대해서도 기록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넥교연혁모음에는 “이 고장에 초등학교 설립을 갈망하던 차 본 학구 소재 봉강리 봉서동 부락에 양정원을 바탕으로, 1946년 10월 19일 설립인가를 얻어 1947년 2월 24일 251명의 학생과 4,266평의 부지를 회사받아 회천서국민학교로 개교하였”고, 양정원의 교사와 시설들이 회천서국민학교로 이설되었음을 밝히고 있다(전라남도보성교육청 2000, 459).

한편 넥교연혁모음에는 양정원이 1945년까지 존속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보성군사편찬 위원회 1995, 835). 이와 같이 양정원의 폐교에 대해 약간의 차이를 띠는데, 미군정 초반까지 운영되다가 1947년에 공식 폐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⁹⁾ 지금도 회천서초등학교에는 양정원의 흔적이 남아 있다. 운동장의 가장 자리에 심어져 있는 큰 나무들이 이때 함께 이식되어온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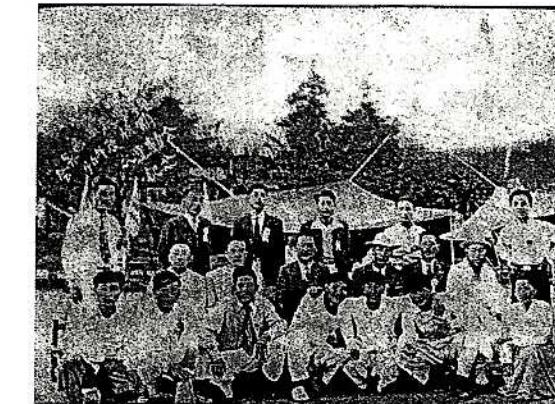
양정원의 옛터 ‘근처’에는 윤윤기 후손이 세워놓은 표지석과 알림석들이 놓여 있다. 이 시설들은 1992년 4월 12일에 설치되었다. 마을 사람들을 비롯해 서울과 광주 등

8) 백형교는 보성군 응지면 출신으로 연희전문 경제학과 2학년에 재학 중 학생운동에 참여하여 퇴학을 당했다. 그의 아버지는 한학자로 정해룡과 왕래가 빈번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어느 날 백형교의 집을 방문한 정해룡이 양정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것을 부탁했고, 조선의 역사를 비밀리에 강의했다고 한다. 이후 백형교가 일제 경찰에 끌려가게 되자, 여수의 김우평(해방 후 부흥부 장관 역임)을 소개해 주면서 도피를 도왔다(이재의 1995, 219).

9) 회천서국민학교의 학교연혁 자료와 보성군사에 기술된 양정원의 폐교에 대한 기록에 차이가 있는데, 필자가 판단하기로는 회천서국민학교의 기록이 더 정확해 보인다. 회천서국민학교의 기록은 학교설립당시부터 내려온 행정기록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반면, 보성군사의 양정원 관련 기록은 사실조사를 통한 기술보다는 사실관계가 확실치 않은 2차 자료 등에 의존해서 기술했을 가능성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에서 내려온 약 200명이 모인 가운데 ‘양정원 터’ 표지석 제막식이 열렸다고 한다 (이재의 1995, 115).¹⁰⁾ 그리고 회천초등학교 원편 국도변에는 1995년 3월 16일에 일부 훼손된 정해룡의 추모비가 건립되었다. 이 비에는 ‘우국지사 봉강 정해룡(憂國之士鳳崗 丁海龍)’이라고 새겨져 있다. 그의 추모비가 이곳에 설립된 것은 정해룡과 회천서초등학교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래의 사진은 양정원과 회천서국민학교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회천서국민학교가 양정원의 설비와 학생을 토대로 인가설립된 것을 기념하여 개최된 1946년 10월 추계운동회 사진이다.



<회천서초등학교 추계운동회(1946년), 가운데 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정해룡>

원래 정해룡 추모비는 1971년 정해룡이 사망한 이듬해에 추모비건립준비위원회¹¹⁾가 구성되어 건립이 추진되었던 비석이다. 그러나 ‘우국지사’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추모비 건립을 제지했고, 경찰의 압력으로 제작이 완료된 추모비는 건립되지 못했고, 추모비를 제작했던 보성을 장터 주변 채석장 뒤편 땅 속에 묻혀있던 것을 1987년 민주화 직후 마을 주민들의 주도로 재건립한 것이다(이재의 1995, 216).

5. 양정원의 성격과 역할

양정원은 본래 서당 전통적 기능인 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특히 개량서당으로 양정원은 교과내용이나 시설 면에서 정규 초등교육기관에 육박하는 것이어서 마을 단위 교육기관으로서는 그 역할이 중대했다고 본다. 주지하듯이 일제 치하에서는 초등교육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서당의 기능과

10) 표지석에 기록된 양정원 관련 내용은 검증을 거쳐야 하는 내용들이다.

11) 추모비건립추진위원회는 장건상, 한길상, 흥남순, 이기홍, 송남현, 윤길중, 김철 등 150여 명의 고문 또는 건립 위원으로 참여했다.

역할은 부각되었다. 초등교육시설의 부족은 일제 강점기 전반에 걸친 문제였으며, 오히려 시대의 발전에 따라 그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다. 물론 통계상으로 초등교육기관이 일시적으로 수적 증가를 보이는 시기가 있지만, 민족교육열의 고조와 교육인구의 격증은 이러한 수적 증가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초등교육시설의 부족에 대한 문제는 일제 강점 기간 내내 계속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초등교육기관 운영의 경비 문제도 크게 작용했다. 따라서 민족의 교육인구를 서당으로 흡수하게 된 배경은 대체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일제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정규학교 특히 공립보통학교에 취학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한 가지는 경제 사정으로 인해 아동으로 하여금 경비가 적게 드는 서당으로 집중케 한 것이고, 셋째로는 정규학교의 부족에서는 불가피한 결과였다. 개량서당의 기능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일제 하 서당은 직접 초등교육기관의 역할도 가지고 있었지만 정규학교에 입학하는 준비과정의 교육도 담당하였다. 양정원은 당시의 많은 개량서당이 그랬듯이 부족한 초등교육기관의 수요를 충당하는 소중한 역할을 담당했다.

다음으로, 양정원의 역할로서 민족의식 양양이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방면의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서당교육이 해방 이후에 전승되지 못한 채 미군정의 등장과 함께 서구식 교육체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거의 소멸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당이 갖고 있는 특수성도 영향을 미쳤다. 가령 아동의 연령이 낮다던가 대체로 서당이 농촌에 산재해 있었다던가 아니면 단위 서당의 인력이 소규모라는 조건들 때문에 외부로의 어떤 행동표시가 거의 없었고 더욱이 어떤 기록상의 자료를 남겨놓기란 매우 어려웠다. 그러므로 서당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식의 양양에 관한 문제는 간접적인 추론으로 밖에는 밝혀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하나의 추정은 일제의 서당에 대한 이중적 태도이다. 일제는 서당에 대해 보호책과 억압, 그리고 장려책과 폐지책을 이중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여기서 억압이나 폐지의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민족의식 문제였다. 즉 식민지 체제에 반하는 교육내용이 서당에서 다루어질 경우 가차 없이 서당을 폐지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여기서 무엇이 식민지 체제에 반하는 것인가의 기준인데,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각 지역의 감독기관장이나 감독자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해룡과 같은 마을 유지 혹은 지주가 설립·운영하는 개량서당과 교회 같은 기관이 설립 운영하는 개량서당 간에는 일제의 통제 수준이나 교과과정에 대한 개입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6. 맷음말

지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봉강 정해룡의 민족교육에 대한 열망과 실천은 현재 보다 더 조명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한 인물의 활동이 미치는 파급력의 범위만을 고려할 경우 지방의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박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그가 했던 활동의

내용이다. 활동의 범위나 영향력이 특정한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활동의 내용이 혁신적이고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것이었다면 그의 존재와 활동은 역사 속에서 기억되고 후세대에게 교육되어야 한다.

일제 강점 하에서 정해룡은 후덕한 지주라는 짤막한 문장으로 다 표현하기는 힘들다. 비록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과 활동 자체가 교육적인 것이었음을 첨언할 필요가 없다. 보성전문학교 도서관 건립비 지원이나 양정원 설립·운영이 아니더라도 정해룡은 자신의 삶과 활동을 통해 후세대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특히 정해룡은 수차례에 걸쳐 지역민들에 대한 구휼활동을 했다. 1929년(기사년)에 큰 흥년이 들어 아사자가 속출하자, 수백 섬의 곡식을 정각수의 명의로 면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해룡의 구휼활동이나 빈민구제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는데, 앞에서 살펴본 「조선일보」의 1938년 1월 15일자 기사나 「매일신보」 1940년 5월 20일자 기사의 내용이 그 근거다. 1940년의 춘궁기에 회천면 사람들이 큰 식량난을 겪게 되자 정해룡은 자신의 곡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활동은 정해룡이 보성이라는 지역사회에서 갖는 사회적 지위를 짐작하게 해주는 데, 이와 관련하여 1936년 6월 17일자로 발행된 「매일신보」는 보성군 내에서 정해룡의 사회적 위치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 신문의 하단에는 “축 매일신보 창업 30주년”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 이 날의 광고는 보성군과 장흥군이 분담하여 지면을 채웠는데, 보성군에서는 총 22건의 축하광고를 실었다. 보성군의 광고 게재자들은 대부분 각 기관들이나 은행, 병원, 학교나 기업체의 대표들이었고, 개인으로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3명뿐이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정해룡이다.

이 광고를 근거로 판단해 보면, 지역 사회 내 정해룡의 지위는 각급 기관장급 수준이었고, 기관 혹은 기관장과의 관계가 돈독했다고 할 수 있다. 정해룡의 이러한 지역 사회에서의 위치가 정해룡의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 중의 하나였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과 그 의지를 실현할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양정원 설립·운영이나 구휼활동, 노비해방과 같은 상징적 행위들은 후덕한 지주의 사회적 기부활동으로 축소시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정해룡의 활동이 지역사의 관점에서 현재보다 더 조명되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현재 다소 논란이 되고 있는 양정원 설립과 관련한 논란은 조금만 당시의 문헌과 자료를 따져보면 논란거리가 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된 데는 양정원이 개량서당의 형태로 설립·운영되었다는 점, 공적 교육기관처럼 공식적인 문서 생산(학교운영 관련 문서, 학생생활기록부 등)과 보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양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현재의 문서자료로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다.

물론 양정원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밝혀질 수 없는 사실들이 더 많다. 그렇지만 밝혀질 수 없는 사실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들을 토대로 규정된 양정원의 설립과 운영은 물론 성격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뒤집을 정도의 비중 있는 내용일 가능성은 높지 않

다. 현재까지 알려진 양정원에 대한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성격일 것이고, 그 것도 문서자료 외에 구술 등을 통해 추가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정원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하여 밝혀져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양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정해진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일 것이다. 이 부분은 향후 양정원과 관련된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다. 양정원을 통한 무상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통한 저항 방식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이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저항의 방식이었다. 이화여전을 졸업한 정해진의 부인 전예준이 양정원 교사로 활동했다는 점은 양정원의 설립과 운영이 표면상으로는 정해룡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실제 배후에서 양정원 설립과 운영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 정해룡의 동생 정해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근거다. 그렇다면 정해진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 문제를 밝히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정해진의 기록을 접하려면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건국청년운동협의회. 1989.『대한민국 건국청년운동사』.
고려대학교 70년사 편찬실.『고려대학교 70년지』 서울: 고려대 출판부.
국사편찬위원회. 1974.『한국사: 17권』. 서울: 탐구당.
국사편찬위원회. 1981.『한국사: 22권』. 서울: 탐구당.
김영식 외. 2001.『지방교육사 : 광주·전남 / 전북』. 한국교육사학회.
김형욱. 1972.『공산주의 활동과 실제』. 광명출판사.
대한독립항일투쟁총사 편찬위원회. 1989.『대한독립항일투쟁총사』. 897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독립운동사』 제9권.
리창교. 1966. “전국대학도서관순례: 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편.”『국회도서관보』 제3권 제3호.
무등일보. 1994. “좌우 대립 때 뜻 못 편 중도민족주의자.”『무등일보』. 1994. 3. 19.
박만규. 2000. “한말·일제시기(1895~1929) 전남지역의 근대 교육.”『광주학생운동연구』.
아세아문화사.
박병섭. 2005. “일제 강점기 별교 지역의 교육운동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찬승. 1992. “광주항일학생운동의 정치사상적 배경.”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전남 사회운동사연구』. 한울.
별교읍지편찬위원회. 2007.『별교읍지』.
보성군사편찬위원회. 1995.『보성군사』.
보성문화원. 2007.『보성의 지명유래』.
보성전문학교. 1936.『보성전문학교일람』.
선경식. 2007.『학산 윤운기』. 서울: 한길사.
송건호. 2002.『한국현대사 2』. 한길사.
신복룡. 2006.『한국분단사연구』. 한울.
심지연 엮음. 1986.『해방정국 논쟁사 I』. 한울.
심지연. 1991.『인민당 연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기홍. 1996.『호남의 정치』. 학민사.
이재의. 1995. “호남인물사(17) : 양정원 설립. 민족교육 실천한 우국지사 정해룡.”『예향』 8월호
전라남도 보성군 교육청. 2000.『학교 연혁 모음』. 453. 459쪽
정병준. 1995.『동양여운형평전』. 한울.
정상철. 2007. “두 귀가 눈이 되었고. 두 발이 눈이 되었고.”『전라도닷컴』. 2007. 4. 11.
정영수. 1985.『한국교육정책의 이념』.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정종희. 1990. “통일에 거는 광명 천지.”『월간중앙』 2월호.
정창현. 2010. “봉강 정해룡과 운암 김성숙의 미공개 한시 6수.”『민족 21』 7월호.
한국역사연구회·전남사학회 공편. 2000.『광주학생운동연구』. 광주: 아세아문화사.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2. “미군정기 지역사회의 정치지형과 갈등구조.”『전남사회 운동사연구』. 서울: 한울.
정길상 구술. 2007. 9. 10.
정종희 구술. 2007. 11. 9.
독립유공자 정해룡 신청서

.... 제2세션 : 15.40-17.10 사회 김민환 (고려대 명예교수)

■ 전후 냉전사법의 재해석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일본의 1960년대와 정훈상 사건

권혁태 (성공회대 일본학)

■ '탈냉전·분단' 시대의 가족사쓰기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

전후 냉전사법의 재해석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철학

jslee@konkuk.ac.kr

목 차

- I. 냉전질서
- II. 국제적인 냉전사법
- III. 한국의 냉전사법
- IV. 재심, 청산인가 정상화인가?
- V. 맷음말

I. 냉전질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대결구조는 제2차세계대전을 통해 국제적으로 심화되었다. 냉전의 논리와 통제방식은 불행하게도 많은 국가에서 법질서의 최고규범이자 정치의 구조원리로 작동하였다. 냉전체제는 우리민족에게 분단을 강요하고 반쪽의 정치 안에 서만 선택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정치적 편집증을 심화시켰고 남북한 모두를 국가로서 비정상적 상태에 빠뜨렸다. 간단히 말해서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당연히 허용되는 정치적 사상과 목소리마저 어김없이 처단하였다. 이렇게 하여 남북의 체제는 각기 상상력의 근원적 결손을 자초하여 민족의 역량에 어울리는 진보를 성취할 수 없게 만들었다. 지배세력들은 내부에서 돋아나는 차이들을 미래의 징후로서 환영하기보다는 박멸해야 할 적으로 규정할 뿐이었다.

지배세력은 이렇게 만들어진 내부의 적을 제거하는데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다. 유사시에는 살육과 같은 극단적 폭력을 행사하지만 평화의 시기에는 세련된 양식을 구사한다. 그 돌보이는 배제의 장치가 재판이다. 냉전사법, 달리 말하면 '냉전적 정치사법(cold-war political justice)'은 좌우 이데올로기적 대립구도 아래서 대항세력에 대하여 자행하는 지배세력의 사법적 테러이다. 이러한 정치사법을 궁극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중심을 완전히 해소시켜 권력을 인간들에게 반환하고 이제 이러한 실존주의자들—원시의 숲을 끊임없이 떠돌며 국가를 거부하는 사람들¹⁾—이 국가저지위원회를 수립하여 불침번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람 사이에 재산과 지위와 계급이

1) 클라스트르/홍성흡(역),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이학사, 2005, 234쪽 이하.

있다면 투쟁은 영원하고, 이러한 투쟁에서 국가는 강자의 도구가 되어 현존 권력을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재판과 억울한 옥사는 국가 상태에 들어온 인간들이 치러야 할 통행세와 같은 것이다.

냉전사법은 좌우대립의 가치 아래 모든 것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실상 전쟁과 정치도, 전쟁과 재판도, 정치와 재판도 구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의 공정성이나 중립성, 법의 지배를 약속하는 자유주의적 열망은 이러한 냉전적 정치재판의 진실과 도저히 양립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사법의 현상을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법관의 피치못할 오류(오판)라거나 극한적 상황에서 허용되는 긴급조치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 국면마다 자행된 무수한 초사법적 악식처형²⁾과 진보적 세력에 대한 정치적 재판을 통해서 정치사법의 정상성을 충분히 학습해 왔다. 한편 우리는 정치재판을 박정희와 같은 독재자들의 인성과 결부시키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소간 주의해야 한다. 그들의 인성이 국가권력을 막장으로 몰아넣은 것은 분명하지만 오히려 제3세력을 용납하지 않는 냉전질서의 배중율(排中律)이 있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세계가 냉전이라는 큰 틀 안에 있었지만 가구은 정치적 전통과 입지에 따라 정치사법의 강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³⁾ 국제적인 냉전질서 속에서도 예컨대, 나토(NATO)에 가입하였지만 공산당을 합법화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유지시켰던 국가들—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에서는 정치재판을 뺨없이 사냥도구로 활용하는 현상을 찾기 어려운데 반해, 냉전질서의 중심과 최전선의 국가들이나 독재자들의 나라에서는 냉전사법의 파고가 높았다. 정치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사회는 공산주의 사상을 지니고 주장하고 실천하는 것을 범죄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물론 이러한 사회에서도 자신의 사상을 실천하는 수단으로서 납치, 암살, 파괴를 자행하는 자들—일본적군파, 독일적군파(Rote Armee Fraktion), 이탈리아 붉은 여단(Brigate Rosse)⁴⁾—이라면 치안법과 반테러법을 피할 수 없다. 어쨌든 유감스럽게도 강한 냉전사법의 전통을 가진 대표적인 나라들이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의 법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해방 이후 친일관료들이 일제의 냉전적이고 파쑈적인 법제와 기술들을 단절없이 승계하였다는 점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최근 한국현대사는 민주화운동의 결실로서 성찰적 행위의 역사를 동시에 만들고 있다. 그러나 과거가 결코 과거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때에만 성찰적 행위들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과거사 정리 작업은 많은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게 명예를 회복하고 권리를 구제해 주었다. 조작간첩의 희

2) 제네바협약(1949)은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분쟁에서 무기를 버린 군인이나 전투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제3조 제1항 라. 문명국인이 불가결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법적 보장을 부여하는 정상적으로 구성된 법원의 사전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언도 및 형의 집행).

3) 필자는 이러한 냉전사법을 탐구한 대표적인 저작으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싶다. Belknap, Michal R., *Cold War Political Justice*, Greenwood press, 1977; Gössner, Rolf, *Die vergessene Justizopfer des kalten Krieges. Verdrängung im Westen - Abrechnung mit dem Osten*, Berlin, 1998; Pereira, Anthony W., *POLITICAL (IN)JUSTICE*,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2005.

4) 테러, 납치, 파괴활동을 이유로 한 처벌은 정치사법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그러나 테러의 위협을 이유로 한 처벌 일 때는 사상과 심정에 대한 처벌 혹은 공포심에 입각한 처벌로 비화하므로 그 때에는 정치사법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생자들, 사법적 박해를 겪었던 혁신계 인물들도 상당수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원하였다. 이 발제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봉강 정해룡(丁海龍) 선생도 일생에 걸쳐 혁신계 정당들—근로인민당,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 민주사회당(대중당)—에 깊이 관여하였다. 혁신계 활동과 관련해 정해룡 선생은 형사법정에서 상당한 고초를 겪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보성가족간첩단사건(1981)과 관련한 법적 평가는 분단체제의 법적 저울 위에서라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발제자는 한국현대사의 다양한 정치재판들이 독재정치의 우연적 파생물이라 기보다는 냉전체제의 구조적이고 필연적 소산이라는 점, 나아가 최근의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조사 그악한 냉전사법을 그저 우회하는 어중한 방식이라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우리는 재심판결을 통해 냉전사법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과하면서 정상화하고 있다.

II. 국제적인 냉전사법

1. 미국의 냉전사법

미국은 이미 20세기 초반부, 특히 제1차 세계대전 말미에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에 대한 정치적 박해를 시작하였다.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혁명이 성공한 이후 미국에서 혁명적인 조직들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필요했다. 이들 급진파들은 미국의 제1차세계대전의 참여를 반대하고, 병역거부를 촉구하였다. 이 시기를 제1차 적색공포(First Red Scare 1919~1920)라고 한다.⁵⁾ 이 때 반전주의자들을 규제하는 법으로 방첩법(Espionage Act of 1917)과 선동행위금지법(Sedition Act of 1918)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반전 선전활동을 자발적인 스파이로 규정하거나 선동죄로 처벌하였다.

대공황 이후에도 공산주의는 여전히 영향력을 떨쳤으며, 1939년에는 미국공산당(CPUSA) 당원수는 5만 명에 이르렀다.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중 1940년에 외국인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일명 Smith Act 18 U.S.C. § 2385)을 도입하였다. 이 법은 제2차세계대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전복행위와 각종 선동행위에 대하여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5년간 정부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었다. 나아가 이 법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공산당원, 나아가 독일계나 일본계 미국인까지도 등록을 요구하였다. 외국인등록법에 입각해서 1941년 19명의 사회주의노동자당 트로츠키주의자들, 1944년 30여명의 파시스트들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다. 1949년부터 1958년 사이에 공산당의 지도자 144명이 스미스법에 의해 기소당해 100명 이상이 각기 1만 달러의 벌금과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1957년 Yates v.

5) 미국의 사회주의자당 대통령후보로 1900, 1904, 1908, 1912, 1920년에 출마하였던 유진 덱스(Eugene V. Debs)가 1918년 미국의 제1차세계대전 참여를 반대하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방첩법(Espionage Act of 1917)에 따라 10년 징역형과 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았다. Debs v. United States, 249 U.S. 211 (1919) 참조.

United States 사건에서 스미스법은 위헌판결을 받았다.⁶⁾ 그러나 이 법은 폐지되지 않았다.

제2차세계대전후 동유럽의 공산화, 베를린 봉쇄, 중국공산화, 미국내 소련첩자 소동⁷⁾,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안에서 제2차 적색공포(The Second Red Scare 1947~1957), 이른바 매카시즘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민주당 대통령 트루먼(1945.6.27~1953.1.20)에서 시작되어 공화당의 아이젠하워(1953.1.20~1961.1.20) 시대까지 지속되었다. 트루먼은 충성명령(Loyalty Order)으로 알려진 행정명령(Executive Order 9835 1947.3.21)을 도입하여 미연방정부 안에서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시도하였다. 민주당 정부는 원래 공산주의에 대해 관대하다는 우익의 비난을 잠재우려고 그러한 행정명령을 도입하였다. 트루먼은 무분별한 마녀사냥을 피하기 위해 충성심사위원회(Loyalty Review Board)로 하여금 FBI의 권한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3백만 명의 공무원이 심사를 받았고, 300명 정도가 안보위협인물(security risks)로 분류되어 해직되었다. 미국과 소련간의 긴장이 점증하면서 충성명령은 공무원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장치가 되었다. 미국내 전복활동을 규제한다는 명분하에서 민주당의 패트 맥거런(Pat McCarran)의 발의에 따라 방대한 국가안보법(The Internal Security Act of 1950)⁸⁾이 제정되었다. 트루먼은 이 법이 전체주의적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였지만 그의 거부는 의회의 재의에 의해 압도당했다.

트루먼의 프로그램이 일시적이었다면, 아이젠하워는 충성심사를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1953년 1월에 위스콘신주 공화당 상원의원 매카시가 상원상설조사소위원회(Permanent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s)의 위원장이 되면서 청문회의 폐회는 극에 달했다. 50년대에 맥카시 선봉에 따라 미국내 공산주의자들이나 진보적 인물들은 공직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배제되었다.⁹⁾ 미국의회는 1954년에는 공산당을 금지하고 공산당원이 되거나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공산당원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반공법(Communist Control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두 개의 사건에 적용되는데 그치고 사문화되었지만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협력하여 이 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냉전체제의 논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¹⁰⁾ 제2차 적색공포는 57년에 매카시가 사망함으로써 막을 내렸다.¹¹⁾ 중심부인 미국에서 이러한 극우 반공 정치와 사법논리는 당연히 주변부 전선에 엄청난 파장을 야기하였다. 물론 미국의 이데올로기적 억압법제는 특정한 시대의 광풍으로 그치지 않고 형태를 바꾸며 지속한다.¹²⁾

2. 독일의 냉전사법

냉전시대의 독일 사법도 정치사법의 오명을 벗기 힘들다. 제2차세계대전후 연합국에 의한 강제적인 나치청산의 시련을 겪은 후 독일은 보수적으로 복구되었다. 이미 나치체제에 책임있는 대부분의 공직자, 나치판사와 나치검사들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오히려 냉전질서의 강화과정에서 구좌익을 향한 대대적인 공세가 재개되었다. 마침 남한사회에서 친일파들이 또 다시 독립운동가와 좌익을 공격하였던 풍경과 흡사하다.

독일공무원법 제3조 제2항은 ‘연방정부에 봉사하는 공직자는 자신의 모든 행실을 통해 민주적 국가관에 고백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문에 근거하여 기민당 정부를 이끄는 아데나워는 1950년 9월 19일 명령(Adenauer-Erlaß)을 통해 독일정부 안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추방하였다. 명령은 “연방정부의 공무원, 관리직 또는 노무직으로서 자유민주적 국가질서에 대항하는 조직이나 단체활동에 관여하거나 이를 위해 행동하거나 기타 지원하는 것은 중대한 직무위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단체를 13개 열거하였다. 명령은 극우집단과 마르크스주의자 집단을 동시에 겨냥하였지만, 어디까지나 중심은 공산주의에 대한 투쟁이었다. 명령은 관련자에 대한 개별적인 심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 지위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였다. 헌법에 대한 충성심에서 의심을 받는 자는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사회주의제국당(SRP:1949년에 설립된 네오나치당)은 1952년에 위헌정당으로 해산되고, 1956년에는 독일공산당(KPD)이 해산되었다.¹³⁾ 독일의 50년대 풍경은 미국의 매카시즘과 평행을 이룬다. 나치 독일은 이미 정치사법으로 악명을 떨쳤지만, 실제로 나치 시대의 정치사법도 반공사법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다르지 않았다. 나치는 집권하자마자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이후로 나치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을 해산시켰다. 따라서 악명높은 나치들이 종전 후에 반공의 기치 아래 미국 정보기구의 뜰마니로서 소임을 수행하는 것은 정한 이치였다.¹⁴⁾ 한편 반나치 투쟁을 전개하였던 공산주의자는 연방공화국(서독)

6) 예이츠 판결은 교사(incitement)와 옹호(advocacy)를 구별함으로써 공산주의이론에 입각한 원칙적인 주장들을 더 이상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7) 히스(Alger Hiss)는 미국무부 공무원이자 유엔 관리로서 유엔의 창설과정에 관여하였으나 전직 공산당원이자 소련 스파이였던 체임버스(Whittaker Chambers 1901-1961)가 1948년 의회의 반미활동조사위원회(House Un-American Activities Committee HUAC)에서 그의 스파이 활동을 증언함으로써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히스의 활동은 미국의 보수파들에게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나 사회보장정책을 공산주의 책동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히스 사건에 대해서는 <http://www.webcitation.org/5yPvH8ee3>

8) 이 법(일명 the McCarran-Walter Act)은 네바다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맥커런이 발의하였으며, 정부전복 및 선동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고, 공산주의자조직은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감시 할 수 있는 전복활동통제위원회(Subversive Activities Control Board)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은 실제로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시행되지도 못했으며, 주요한 규정이 1965년과 1967년에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http://tucnak.fsv.cuni.cz/~calda/Documents/1950s/Inter_Security_50.html; Letwin, Leon, "Communist Registration under the McCarran Act and Self-Incrimination", *Wisconsin Law Review*, 1951, p. 704-717.

9) 매카시즘의 회생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으나 과거 공산당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고 수백 명이 징역형에 처해졌고, 12,000명 정도가 실직하였다. 동성애자들도 매카시즘의 타깃이 되었다. 영화계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300여명의 배우, 작가, 감독이 일자리를 잃었다. 블랙리스트는 연예계, 대학, 각급학교, 법조계 여타 직역에서도 활용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해안경비대가 모든 선원에 대하여 보안성심사를 시행하였고, 3,000여명의 선원도 실직하였다.

10) McAuliffe, Mary S., "Liberals and the Communist Control Act of 1954",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63(1976), 351쪽 이하.

11) 매카시가 물러날 때에도 미국국민들 중에는 그를 반대하는 사람보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한다. 워렌 대법원장은 당시에 미국헌법상의 권리장전을 국민투표에 붙였다면 폐지되었을 것이라고 일갈하였다.

12) 코울은 9.11테러 이후 등장한 애국자법(Patriot Act)이 매카시즘의 변형이라고 지적한다. Cole, David, "The New McCarthyism: Repeating History in the War on Terrorism", *Harvard Civil Rights-Civil Liberties Law Review* vol. 38(2003), 1쪽 이하.

13) BVerfGE 2, 1 - SRP-Verbot(1952); BVerfGE 5, 85 - KPD-Verbot(1956)

14) 나치전범으로 악명높은 아이히만(Eichmann)이나 바르비(Barbie)도 제2차세계대전의 종결후에 미군정보당국의

에서 과거에 자신을 박해했던 나치검사에게서 다시 조사를 받아야했다.¹⁵⁾

한국전쟁을 통해 국제적으로 강화된 냉전질서 아래서 서독 시민 중에서 150,000-200,000명 정도가 공산주의자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 중에서 7,000여명 정도가 처벌되었다. 이것이 1950년대의 독일의 풍경이다.¹⁶⁾ 1956년에 위헌판결을 받은 공산당은 1968년에 재건되었으나 냉전사법의 결과는 개선되지 않았다. 빌리 브란트는 1972년에 <극단주의자결정(Extremistenbeschluß 1972.1.28)>을 제정하였다.¹⁷⁾ 이에 따라 급진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나 급진적인 조직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의 직원이 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법제는 각주에 도입되었으며, 1971년 헌법재판소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헌법에 대한 충성의무에 입각하여 철레스비히-홀스타인 주공무원법¹⁸⁾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오늘날에는 많은 주가 이러한 법제를 폐지하였으며, 유럽인권법원은 이러한 직업금지를 인권침해로 규탄하였다.¹⁹⁾ 공산주의자들은 나치에 대한 저항활동으로 희생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치불법배상법(BEG 1953)은 이들에게 신청권을 봉쇄하였다.

III. 한국의 냉전사법

1. 공산당 금지의 역사

제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질서에서 중요한 전선으로서 독일과 한국은 냉전체제의 가혹한 댓가를 치러야 했다. 그러나 그전에도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에 냉전사법의 쓴 맛을 체험하였다.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파쇼적인 일본에서도 공산주의는 금압의 대상이었다. 일제는 치안유지법(1925)을 통해 전시체제에서 전쟁을 반대하거나 국체나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세력을 탄압하였다.²⁰⁾ 일본에서 1922년에 공산당이 협력사 역할을 수행하였다.

15) 펑케/김조년(역), 카토 본트여스 판 베이크, 바이북스, 2007.

16) 공산주의자들을 상대로 한 녹일의 냉전사법에 대해서는 Gössner, Rolf, *Die vergessene Justizopfer des kalten Krieges. Verdrängung im Westen - Abrechnung mit dem Osten*, Berlin, 1998, 125쪽 이하.

17) <극단주의자결정>은 명분상 적군파와 태러리스트를 거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산당과 사회운동에 관여한 인물을 공직에서 배제하려는 것이었다. Vor 30 Jahren: Neue Richtlinien zum Radikalenerlass: Berufsverbot für linke Gesinnung. <http://www.wdr.de/themen/kultur/stichtag/2006/05/19.html>. 원래 독일에서 직업금지는 나치가 공산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유대인을 공직에서 추방하려는 공무원숙정법(Berufsbeamtengegesetz vom 7. April 1933)에서 시작되었으며, 제2차세계대전후에는 연합국은 한 때 나치들을 공직에서 추방하려는 숙정법을 도입하였다.

18) 기본법의 의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헌신하겠다는 보증을 제공하는 사람만이 공무원관계에 진입하는 것이 허용된다.(동법 제9조 제1항 2호) 현재의 결정은 BVerfGE 39, 334 - Extremistenbeschluß, <http://www.servat.unibe.ch/dfr/bv039334.html>.

19) 유럽인권법원은 포그트 사건(Vogt v. Germany, 1995)에서 독일정부가 공산당에 가담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포그트를 파면한 것은 유럽인권협약상의 표현의 자유(제10조)와 집회결사의 자유(제11조)를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다. 독일정부 파면기간동안 임금 전체, 연금기간 완전산입, 상당액의 손해배상과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회해하였다.

20) 1945년까지 7만 5,000명 이상이 이 법률에 의하여 체포되었으며, 실제로는 약 5,000명을 상회하는 수가 재판에 회부되었고, 1945년 패전시에 그 절반 정도가 수감상태에 있었다. 비줄리, 일본근현대사, 을유문화사, 2010, 299쪽 이하.

지하당의 형태로 조직되었으나 치안유지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조선에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특별히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과 조선사상범예비구금령(1941)을 통해 독립운동가와 공산주의자 등을 억압하고 감시하였다. 이미 파시즘 대 공산주의의 기본적 대립구도가 조선에서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이러한 파쇼적 제도와 억압의 테크닉(전향공작), 그 수호세력들까지 계승하였다. 1945년 이후에 한국의 분단, 중국의 내전과 공산화, 한국전쟁은 동아시아에서 한반도를 이데올로기적 분계선이자 보루로 강고하게 구축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 내에서 공산주의자와 좌익도 해금되었다. 전후 독일에서도 레지스탕스들에 대한 사면법이 제정되었듯이 일본에서도 1945년 10월에 사면령이 공포되어 과거 군국주의 정권에 반대한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감옥에서 풀려나 합법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맥아더의 최고사령부는 패전국의 처리라는 연합국의 목표를 실행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냉전적 질서 속에서 미국적 가치와 목표를 강행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일본정부는 1949년에 공직추방령을 개정하여 과거 군국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와 여타 급진 좌파들마저도 공직에서 배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2만 2천명의 좌익 노동자들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해고되었다. 나아가 1950년 6월 7일 맥아더는 일본공산당중앙위원 24인의 활동을 금지시켰다.²¹⁾ 일본의 공산당은 1949년 선거에서 한때 10% 득표율을 기록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냉전 체제 속에서 소수정파에 머물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을 통해 파시스트 정부에서 해방된 곳에서는 파시스트에 대한 투쟁을 벌이면서도 파시스트들의 주요한 정치노선을 계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이 연속이거나 단절이거나 문제로 침예하게 제기되었다.²²⁾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현대사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1946년에 남조선노동당이 미군정에 의해 금지되었고, 정부수립후 1948년 12월 1일에 국가보안법이 제정·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1949년 한해에만 118,621명의 좌익이 검거 투옥되었으며, 132개의 정당이나 조직이 강제로 해산되었다. 정부는 1949년 6월에 보도연맹을 창설하여 여기에 30만명 이상을 가입시켰으며, 이들의 상당수가 한국전쟁 초기에 군경에 의해 대량으로 살육되었다. 남한의 지배세력들은 정치적 결림돌이라고 판단한 세력에 대하여 전쟁을 빌미로 정치적 집단살해(politicide)를 자행하였다. 이런 이유로 사찰당국이나 법원의 공산주의자 박해건수가 앞서 말한 독일에 비하여 한국이 훨씬 적었다.

냉전체제와 냉전사법에서 희생자가 진짜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희생자는 다만 공산주의자가 되어 죽어갈 뿐이다. 사회민주주의자인데 억울하게 공산주의자로 몰려 처형되었다는 입장은 냉전사법의 본질을 투시하지 못한 것이다. 냉전사법은 항상 어떤 희생양을 찾아 별이는 상징적인 투쟁이므로 희생자의 진실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희생자이므로 공산주의자, 변란음모자, 간첩이어야 하는 것인지, 공산주의자, 변란음모자, 간첩이기 때문에 희생자가 된 것이 아니다. 냉전사법은

21) "Japanese Communist Party Outlawed: MacArthur Moves", The Canberra Times, 1950.6.7) <http://trove.nla.gov.au/ndp/del/article/2783197>

22) Perels, Joachim, "Die Restauration der Rechtslehre nach 1945", *Kritische Justiz* 1984, 359쪽 이하.

이미지의 정치를 추구한다.²³⁾ 조봉암에 대한 사형판결이 내려졌을 때도 미국은 실제로는 이이제이 방식으로 이승만과 조봉암 사이에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였다고 한다.²⁴⁾

냉전사법의 주요사례로서 혁신계 인사들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새로운 통일방안과 민주적 사회주의 정치노선을 열렬하게 주장하며 냉전체제의 강고한 분계선을 흔들고 있었다. 그들은 냉전체제의 주변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지배세력에 대해 타격을 줄 수도 있고, 그러한 한도 내에서 냉전체제의 중심에 대해서도 일정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다. 어쨌든 우리는 냉전사법을 냉전체제의 세계적 구도 속에서, 국내정치적 구도 속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냉전의 최전선에서 정치적 제3세력은 국제적인 냉전체제의 교란자이자 이물질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내정치의 구도에서도 제3세력은 보수세력에게는 적이며, 자유주의 세력에게는 경계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사회에서 독재자와 보수세력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러한 사법살인을 자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대체로 자유주의 세력의 동조와 묵인 속에서 보수세력의 지배욕망이 극단적으로 관철될 수 있었다.²⁵⁾ 그런 점에서 진보당 사건은 중심에서 매카시 선풍이 불어올 때 주변부적 정치환경은 그러한 선풍을 극단적으로 증폭시키고 남용한다는 데에 대한 본보기 사례이다.

2. 냉전사법의 구조적 원인들

1) 법이데올로기로서 법의 지배

정치재판은 사회대중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상징적 질서를 공고하게 한다.²⁶⁾ 정치재판은 헤게모니 블록이 비판적 대안세력을 상대로 벌이는 사법적 박해극이다.²⁷⁾ 정치사법은 정치적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적대와 대립이 격렬해질 때 정치적 소수파를 겨냥하여 나타난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안정이 달성되면 법 적용 과정에서 지배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경향과 믿음이 강화되면서 그에 대한 기내사 법치주의, 법의 지배, 법지국가라는 법이데올로기로 강화된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법이데올로기는 정치사법의 진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정치사법의 폐해가 권위주의적인 체제에서 극심하지만, 이른바 법치국가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사

23) Lubin, Avi, Society's Symbolic Order and Political Trials: Toward Sacrificing the Self for the "Big Other",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Vol. 65(2005), 367-379.

24) 박태균과 강원용의 대담: 이승만-조봉암 사이에 양다리 걸친 미국 <http://blog.daum.net/cjk4205/10870618>. 검색일: 2011-5-20.

25) 이 점에 대해서는 서중석, 『조봉암과 60년대(上)』, 역사비평사, 1999, 207쪽 이하.

26) Kirchheimer, Otto, "Politische Justiz", *Funktionen des Staats und der Verfassung*, Frankfurt/ M., 1972, 148쪽.

27) 민주적인 국가에서 또는 헤게모니상의 교란이 있는 때에는 (보수적이고 반민주적인) 사법부가 정치적 포부를 드러낸다. 바이마르 공화국 초기에 보수적인 사법부가 테러범의 정치적 지향(좌·우)에 따라 악명 높은 이중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은 정치사법의 고전적 사례이다. Emil Julius Gumbel, *Vier Jahre politischer Mord*, Verlag der neuen Gesellschaft, Berlin-Fichtenau, 1922. 원문은 <http://www.archive.org/stream/vierjahrepolitis00gumb#page/n0/mode/2up>. 검색일: 2011-7-4.

라지지 않는다.²⁸⁾ 법관의 자율성과 신분이 보장된 체제에서는 오히려 사법부가 반정치적 정치를 독자적으로 추구하기도 한다. 사회개혁을 담는 법에 대하여 보수적인 법원이 정치적 주체임을 자임하면서 반동적 정치사법—미국의 뉴딜법안 등에 대한 위헌 판결—을 보여준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체제라면 저항세력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재판같은 것은 거추장스럽다. 최대한의 물리력으로 최대치의 살육을 자행한다. 전쟁이나 비상사태에서 법원이 동원되더라도 그것은 지성적인 판단기구가 아니라 처형자에 지나지 않는다.²⁹⁾ 사활적인 상황이 아닌 때에만 권력은 나름대로 법원에 대하여 사법적 장치로서 품위를 유지시키면서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기구로 활용한다.³⁰⁾ 지배체제가 공고화되고, 체제 정당성이 사회전체적으로 내면화되는 수준에 이르면, 사법부의 억압적-군사적 기능이 약화되고, 이데올로기적-교육적 기능이 강화된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리력이나 심리적 지배력,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국가가 이미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사법의 폭력성은 감지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법부는 억압적 기구로서의 측면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지배질서를 관리하고 정당화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치 정치사법이 종식되고 법적 유토피아가 도래한 듯한 착각을 주지만 정치사법이 형태를 바꾸었을 뿐이다. 위기가 오면 권력은 법의 지배를 언제든지 철회하고, 적나라한 폭력과 제도화되고 은폐된 폭력 사이에서 위치전환을 한다. 단계와 수준에 따라 양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일뿐 정치사법에도 총량불변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본다.

2) 국가보호법제

정치사법의 중요한 법적 기반은 국가보호법제와 심정형법(心情刑法)이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해방 이후 이를 승계한 국가보안법, 국방경비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보안관찰법 등이 그 실례들이다. 이러한 국가보호법제는 평화시에는 비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이지만 유사시에는 보도연맹에서 보듯이 학살프로그램이다. 국가보호법제는 정당, 통일운동, 노동운동, 청년문화운동, 학문 사상 종교의 영역을 가리지 않고 진보의 징을 잘랐다. 국가보호법제는 한마디로 현재의 지배체제

28) Kirchheimer, Otto, "Politische Justiz", *Funktionen des Staats und der Verfassung*, Frankfurt/ M., 1972, 147쪽.

29) 프랭클은 나치체제의 분석에서 이중국가(Doppelstaat), 즉 규범국가(Normenstaat)와 비상조치국가(Maßnahmenstaat)로 유형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규범국가는 여전히 법치국가의 외관을 유지하고 불법적인 판결을 규범에 입각하여 면책시키는데 비해 비상조치국가는 법치국가의 허울조차 벗어던지고 모든 국가행동을 규범의 테두리 바깥에서 전개한다. Fraenkel, Ernst, *Der Doppelstaat*, Erst Fraenkel Gesammelte Schriften Bd.2(Nationalsozialismus und Widerstand), Nomos, 1999.

30) 페레이라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군정의 특성을 비교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독재자는 운동권을 제거하는데 정치사법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강제적으로 실종시켰으며, 심지어 다수의 법관과 법률가들이 고문당하고 실종되었다. 반면 브라질에서는 군사법정이 정치적 이단자를 재판하는 데에 활용되었지만, 이 법원은 비교적 높은 무죄판결률, 경미한 형량, 정치범을 위한 변호사의 관여기회를 보여주었다고 비교한다. 브라질은 칠레나 아르헨티나보다 전통적인 법원칙이나 절차를 중시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Hinton, Mercedes S., "Book Review",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39(2007); Pereira, Anthony W., *Political (In)justice: Authoritarianism and the Rule of Law in Brazil, Chile and Argentin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2005.

를 영구보존하려는 반역사적이고 사이비종교적인 광기이다.³¹⁾ 이러한 국가보호법제의 적용은 당연히 정치사법으로 귀결된다.

국가보호법제는 본질적으로 심정형법이다. 심정형법이란 인간의 일정한 성향이나 정치적 지향 그 자체를 죄책의 근거로 삼는 처벌법을 말한다. 달리 표현하면 세계관형 법(世界觀刑法)이다. 체제는 예로부터 비판적인 인물들을 종교적 이단자, 공화주의자, 자유주의자(반왕당파), 무정부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처벌하였다. 교과서에 나오는 자유주의적 책임원칙(Schuldprinzip)은 사상이나 심정만으로는 범죄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파쇼사회는 행위나 그 결과가 아니라 개인의 심정을 통해 범죄를 규정한다.³²⁾ 심정형법에 입각한 재판은 법관에게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한다.³³⁾ 심정형법은 사실상 법원에게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고, 법관은 심정을 발견하려고 하면 할수록 중세의 종교재판관(inquisitor)으로 전락한다. 그러나 유죄판결의 근거가 최종적으로 행위자의 심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생각은 순진한 것이다. 행위자의 심정은 본래 법관이 알 턱이 없는 사항이다. 결국 행위자의 심정이란 행위자의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해당 피고인에게 투영한 것, 권력자가 품은 두려움 자체인 것이다. 유죄판결의 근거는 피해자의 심정에 있지 않고 가해자의 심정에 있다. 마녀재판과 이단재판에 걸려든 자가 결코 누명을 벗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가해자의 불합리한 광증과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대목은 9.11 이후 테러방지법³⁴⁾은 냉전논리에 입각한 국가보호법제를 서서히 대체하면서 안보기술에 의존한 세력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사법의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3) 사법권독립과 자유심증주의

법관이 정치사법의 실행자로서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고, 책임조차 배제하는 특권적 구조가 사법권독립이다. 사법권독립은 정치적 외부압력으로부터 판사의 자유로운 판결, 즉 법관의 자주적인 결정을 보장하려는 장치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법권독립은 재판독립권이기도 하다. 이 용어는 사법권을 법관 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바로 여기에 사법권의 사유화와 무책임의 위험이 함께 도사리고 있다. 권력자의 외압이나 체제의 압력에 맞서려는 판사에게는 재판독립권은 자신의 양심과 신분을 지켜주는 장치이다. 반면 권력에 순응하는 판사나 지배권력에 기꺼이 영합하는 판사에게는 재판독립권은 실제로 아무런 가치도 없다. 혹여 근본적인 체제변화 이후에 과거의 정치재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즈음에 이러한 유형의 판사들은 재판독립권을

31) 국순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편), 『민주법학』 8호, 관악사, 1994, 126쪽.

32) 나치시대 형법학에서 두각을 나타낸 칠학파에 대해서는 Eckert, Jörn, “Was war die ‘Kieler Schule’”, F.J. Säcker(엮음), *Recht und Rechtslehre im Nationalsozialismus*, Baden-Baden, 1992, 37쪽 이하.

33) Ostendorf, Heribert, “Politische Strafjustiz in Deutschland”, *Kriminalität und Strafrecht*,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0, 23쪽.

34)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표적인 반테러법제는 Patriot Act of 2001; Violent Radicalization and Homegrown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7; 테러방지법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의는 이계수, “테러방지법안의 쟁점”, 민주주의법학연구회(편), 『민주법학』 25호, 2004, 371쪽.

법관특권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악행을 가리는 도구로 원용할 것이다.³⁵⁾

사법권독립과 더불어 법관의 무책임을 무제한으로 보장해주는 구조가 이른바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다. 정치사법으로 문제되었던 사건들에서 법원은 당시에 피고인의 불법수사·고문·증거조작 주장을 거의 예외없이 배척하였다. 특히 사상이나 내면의 세계를 범죄의 실체로 삼고 있는 심정형법의 적용에 있어서 판사는 임의대로 심증을 형성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자유심증주의는 원래 수사기구에 의한 증거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대형사소송법의 요체였다. 그런데 정치재판을 자행하는 판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바로 이 자유심증주의를 극단적으로 남용한다. 증거 자체를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법원칙이 정치사법에 대해 좋은 면책근거로 변질된다. 자유심증주의가 정치적 자의의 숙주가 되고 있다. 독일형법에 판사를 겨냥한 법왜곡죄(法歪曲罪)라는 죄목이 있지만 이 조문은 악명높은 나치판사들에 대한 처벌규범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자유심증주의와 사법재량이라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법관의 고의(故意)를 제대로 증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4) 사법관료제

한국의 사법조직은 본질적으로 관료제이다. 이러한 관료제는 직업법관제도를 정착시키며 획일적인 법문화와 법의식을 양산하고 조장한다. 이 관료적 조직 안에서 최고위직을 목표로 삼는 법조인은 관료제하에서 보신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³⁶⁾ 동조와 순응의 과정에서 한때 호기 있던 판사마저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인성을 가지게 된다.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인성은 법원의 존재목적에 대한 망각과 부정의에 대한 면역결핍증으로 나타난다.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Banalität)³⁷⁾이라는 개념으로 바로 이러한 관료제 속에서 주체적 사유능력과 책임감을 상실한 인간을 지적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타입의 법률가는 타인의 목숨에 관한 결정을 내리면서 권력자의 의중이나 승진경로를 계산하기에 바쁘다. 그들은 설혹 정치재판에 대해 일말의 가책을 느끼더라도 법에 따랐을 뿐이라고 자위한다. “법은 입법자가 정하는 것이고 나는 그저 적용할 뿐이다.”³⁸⁾ 이러한 관료적 무책임 속에서 법조는 정신적으로 획일화된다. 법조인이 관료적 구조에서 소극적으로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판사로서 자신의 소명을 자부하는 확신법들도 적지 않았다.

35) 나치시대의 암마의 재판장이라고 불린 프赖이슬러(R. Freisler)의 배석판사로서 수백 건의 정치범 사형판결에 관여하였던 레에제(Rehse)에 대하여 독일연방법원은 “그가 독립된 법관으로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더 이상 법왜곡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BGHSt, NJW 1968, 1339쪽. 결국 뻔뻔한 강심장은 죄가 없고, 마지못해 다른 자는 죄인이 된다. 즉 광적인 나치판사는 확신법의 반열에 오른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확신법을 포괄적으로 무죄판결하는 형법체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36) 한겨레신문 2005.10.22자.

37) 아렌트/김선옥(엮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2006.

38) 실제로 서양의 망나니들이 사람을 처형하는 데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칼날에다 “판단은 나리께서 하시는 바이고, 나는 그저 집행할뿐(Die Herren steuern dem Unheil, ich exequiere ihr Endurteil)”이라고 썼다. 이 맥락에서 망나니의 죄의식과 판사들의 죄의식은 동질적이다. 물론 정치재판을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광적인 판사들은 전적으로 다를 것이다.

IV. 재심, 청산인가 정상화인가?

1. 조봉암 무죄판결

1) 진보당사건

조봉암은 1952년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80여만 표, 1956년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216여만 표를 획득했다. 그는 1956년 11월 10일 진보당의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서울시경은 진보당의 정강정책, 특히 평화통일론의 이적성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1958년 총선을 앞두고 1월 13일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변란 혐의로 전격 체포하고, 공보부장관은 2월 25일 진보당의 정당등록을 취소하였다. 육군 특무부대는 1958년 2월 8일 HID 공작요원으로 남북교역을 하던 양이섭을 연행하여 여관 등에 불법적으로 감금한 상태에서 북한의 지령과 자금을 조봉암에게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하였다. 조봉암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특무대는 양이섭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양이섭과 조봉암을 간첩죄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은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에 대하여 국가변란 혐의³⁹⁾로 2월 8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소하였고, 양이섭과 조봉암에 대해 간첩 혐의로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기소하였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1958년 7월 2일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의 국가변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조봉암과 양이섭의 간첩 혐의에 대해 간첩죄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제3조⁴⁰⁾를 적용하여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958년 10월 25일 양 사건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조봉암, 양이섭에게 각각 사형을 선고하고, 진보당 간부들에게는 징역 2년 내지 3년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1959년 2월 27일 조봉암의 간첩 및 국가변란 혐의, 양이섭의 간첩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사형을 확정하였다.⁴¹⁾ 다만 진보당 간부들에게는 국가변란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진보당강령에 대한 무죄판단

원심은 진보당을 국가보안법 제1조상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단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심에서 대법원은 진보당의 강령이 전반적으로 헌법질서 아래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⁴²⁾

39) 국가보안법(1950) 제1조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 또는 집단에 있어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간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결사 또는 집단의 지령이나 전항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 살인, 방화 또는 건조물, 운수, 통신 기관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0) 국가보안법 제3조(1950) 전2조의 결사 또는 집단의 지령이나 전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 그 목적사항의 실행을 혐의, 선동 또는 선전하거나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1) 대법원판결 1959. 2. 27. 4291형상559.

(...) 진보당이 지양하고자 하는 소위 ‘낡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낡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자본주의’ 등이라고 함은 소위 자유방임적 자본주의(laissez-faire capitalism)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진보당의 경제정책은 사회적 민주주의의 방식에 의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부작용이나 모순점을 완화·수정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 체제의 골간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고, 진보당의 정치형태 역시 주권재민과 대의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용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구 대한민국헌법(1954. 11. 29. 헌법 제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구 대한민국헌법’이라 한다) 및 현행 헌법의 각 전문 및 경제조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 및 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진보당의 통일정책인 평화통일론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변란할 목적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는 위장평화통일론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다른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그 평화통일론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당시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통일론이었던 북진통일론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그려한 사정을 들어 곧바로 진보당의 통일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주창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논평

이 판결은 혁신계 정당의 강령 자체를 체계적으로 다룬 결정으로서 중요하다. 이 결정은 이른바 제3의 정당의 합헌성을 소급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사유재산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어쨌든 진보당 이후 등장했던 혁신계 정당들의 강령—민주적 사회주의와 평화통일론—도 이 판결에 비추어 합헌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정당의 강령을 실천하는 행위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조용수 무죄판결

1) 민족일보사건

조용수는 한국전쟁 당시 도일하여 재일거류민단 간부로 활동하다 4·19직후 귀국, 혁신정당인 사회대중당 후보로 경북 청송에서 민의원에 출마하여 낙선한 후 1961년 2월 13일 혁신계 진보성향 신문인 민족일보를 창간하여 당시 혁신계 인물들이 주장하던 남북협상, 중립화통일, 민족자주통일 등 진보적 논지를 전개하였다.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5월 18일에 조용수는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연행당한 후 구금상태에서 간첩혐의자 이영근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북한을 고무·동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민족일보는 폐간조치되었다. 같은 해 7월 12일 설치된 혁명검찰부는 7월 23일에 조용수 등 민족일보 관련자들을 혁명재판소에 기소하였고, 혁명재판소 심판부(1심)는 조용수에게 소급입법인 특수범죄처벌법(1961.6.22 제정; 1957년 12월 21일 시행) 제6조⁴³⁾를 적용하여 “사회단체의 주

42) 대법원전원합의체 2011.1.20. 2008재도11.

43)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특수반국가행위)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요간부로서 민족일보 사설 등을 게재하여 북한의 활동을 고무·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8월 28일에 사형을 선고하였고, 상소심판부(2심)는 같은 해 10월 31일에 정당의 주요간부로서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하였다. 조용수는 32세의 나이로 1961년 12월 21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처형되었다.

2) 무죄판결의 요지

특수범죄처벌법 제6조는 피고인 조용수가 정당 또는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인 것을 전제로 한다. 혁명재판소 제1심은 조용수를 사회단체의 주요간부로 보았고, 제2심은 정당의 주요간부로 보았는데, 재심법원은 조용수가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다.

(가)신문사는 일정한 논지를 가지고 사회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며 오로지 사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단체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공익성을 일부 지닌 조직만을 따로 떼어 사회단체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법 해석의 원칙상 사회단체라는 개념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나)조용수는 1960년 6월 15일 귀국하여 7월 29일 실시된 민의원 총선거에 사회대중당 후보로 경북 청송에서 입후보하여 낙선하였다. 사회대중당은 1960년 5월 13일 결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공보처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의원 선거를 치렸다. 한편 조용수는 사회대중당의 창당발기인명단, 결당준비위원회 대표자대회 임시의장단 명단뿐만 아니라 민의원 선거전에 사회대중당 총무위원, 위원장, 집행부 및 선거대책위원회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나아가 낙선이후에 조용수가 정당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도 없다. 정당활동과 관련해서는 사회대중당 결당준비위원회의 공천을 받은 것이 유일한데 당시 사회대중당은 전국적으로 약 127명의 후보들을 공천하였다. 공천받은 것만으로 조용수를 정당의 주요간부라고 볼 수 없다.

(다)조용수가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했다면 그 행위는 특수범죄처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으나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주요간부가 아니므로 특수범죄처벌법 제6조의 해당여부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라)공소사실의 내용이 된 민족일보의 기사는 중립화통일론 지지, 통일의 전단계로서 남북교류 활성화주장, 남북교류를 위한 남북학생회담의 지지, 이러한 논지와 배치되는 민주당 장면 정권의 통일정책에 대한 반대, 반공법과 임시조치법 소위 2대 악법에 대한 반대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모두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조용수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가보안법 제1조 (반국가단체구성)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이하반국가단체라고 칭한다)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마)신문을 포함한 언론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전파하는 매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자유롭고 다양한 의사형성을 위한 다양한 성향의 언론의 존재는 다원주의를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신문의 논지를 두고 이적성을 심사할 때에는 일반개인의 경우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3) 논평

유죄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수범죄처벌법)은 군사반란으로 불법적으로 조직된 국가재건최고회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최저기준마저 유린하였으며, 이 법은 정치적 표현행위를 자의적으로 금지할 뿐만 아니라 공포의 행위도 소급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⁴⁾ 특수범죄처벌법은 원래 소급해서 처벌하려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독일의 법철학자 라드브루흐(Radbruch)가 말한 법률적 불법(gesetzliches Unrecht)⁴⁵⁾에 전형적으로 해당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법이 법률적 불법이나 위헌적인 악법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고하지 않고 그 법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런 식의 무죄판결은 법해석이 아니라 폭력적 논증이라고 본다.⁴⁶⁾

실체로 들어가면 어쨌든 판결은 조용수의 정치적 활동—평화통일론, 남북교류지지, 2대악법반대 등—이 합법적이라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조봉암의 무죄판결이나 조용수의 무죄판결을 통해서 혁신계에 대해 정치재판이 법관들의 이데올로기적 과잉에 따른 사법살인이었음이 밝혀졌다.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입각한 유죄판결—특히 제6조에 따른 처벌—은 전반적으로 재심을 거칠 필요 없이 입법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

3. 중앙사회당: 구익균의 무죄판결

구익균은 1908년 평북 용천에서 태어나 신의주 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1928년 항일운동을 하다 일본 경찰에 구속됐다. 이듬해 그는 상해로 망명하여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나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며 항일독립운동을 벌였다. 1935년 일본 경찰에 체포돼 신의주로 압송됐다. 1년간 옥고를 치른 후 해방 전까지 항일운동에 몸 담았다. 그는 1961년 1월 진보적 정치인 대다수가 모인 통일사회당 재정위원장장을 맡았다. 통일사회당은 당시 장면 정부가 반공정책 강화와 사회적 혼란 방지를 명목으로 추진하던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을 반대하면서 영세중립화 통일운동을 전개했다. 5·16 군사반란 이후 구익균은 서상일 등과 함께 반국가특수행위(특수범죄처벌법 제6조)로 혁명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중앙통일사회당사건).⁴⁷⁾ 서울고법 형사2부

44) 부칙 내용은 다음과 같다.“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 1962년 헌법은 이 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른바 봉쇄조항(封鎖條項)—을 두고 있다. 문자적으로 위헌성을 논의하기보다는 실질적 법치국가나 입헌주의의 관점에서 위헌성을 거론할 수 있다.

45) 이에 대해서는 이재승, 국가범죄, 2010, 455쪽 이하 참조.

46) 이미 대법원은 유신 말기에 특수범죄처벌법의 소급처벌규정을 합헌적이라고 선언하였다는데 또 다른 원죄가 있다(대법원판결 1979.6.26, 78도168). 문제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특별한 언급도 없이 재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한다는 점이다.

(김용섭 부장판사)는 구익균씨 등 통일사회당 사건 관련자 5명이 제기한 재심사건의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2011.10.24). 재판부는 “구씨 등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다는 의도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의 제정을 반대한 것으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이라며 “이들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면서 북한의 목적과 동일한 내용을 선전·선동하거나 북한 활동을 고무·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⁴⁸⁾

4. 한국교원노조총연합회사건⁴⁹⁾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이목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5.16 군사반란후 혁명재판소에서 반국가특수범죄(제6조)로 유죄판결을 받았다.⁵⁰⁾ 당시 한교 조는 1961년 3월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였던 반공임시특별법안과 데모규제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는데, 이들은 이러한 활동을 이유로 영장없이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관련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여 2009년 10월 13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처벌의 불법성을 밝히고 국가에게 재심을 권고하였다.⁵¹⁾ 대구지방법원은 재심개시를 결정하였고(2010.2.11) 이어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2010.4.21), 검찰의 항소와 상소는 각각 기각되었다.⁵²⁾ 2011년 대구지법은 북한에 대한 찬양 및 고무 범행을 방조했다는 피의사실 만으로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한 것은 당시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3년 6월을 소급적 용하도록 한 위헌의 소지가 있는 특수범죄처벌법을 그대로 적용한 불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혁명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재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데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주장은 신의성설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고,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재판은 법률의 불법성과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의 불법성을 충분히 지적함으로써 조용 수 사건의 판결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47) 서상일 김성숙 고정훈 등 14인이 기소된 중앙통일사회당사건 재판기록은 한국혁명재판사(제3집, 831쪽 이하)에 실려 있다.

48) “103살 독립운동가 구익균선생, 재심 항소심서 ‘북한동조 무죄’”,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view?newsId=20111024202108378&clusterId=441130>

49) 대구지법 2011.1.25, 2010가합2484

50) 한국혁명재판사 제3집, 1046쪽 이하.

51) “5.16구대타직후 인권침해사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08』, 2010, 193쪽 이하.

52) “50년 만에 교원노조활동 무죄 판결 받은 이 목 선생님”<http://www.newschan.net/news/view.php?board=news&nid=56800>

특수범죄처벌법의 불법성

단계	내 용
입법단계	범죄단체의 한정파괴적 법제정 행위
법률자체	내용의 자의성, 소급 적용// 재검토 봉쇄규정(62년 헌법)
수사단계	불법체포, 불법적인 장기구금, 고문의 사용
재판단계	수사과정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악법의 맹목적 적용

5. 사회대중당 김달호 무죄판결

김달호는 경북 상주에서 출생하여 일본 주오 대학 법학부에 입학했다.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사법관시보를 거쳐 조선총독부 판사로 임용되었고, 청진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지낸 후 만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일제 패망 후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로 근무했으며, 제3대 총선에 상주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으며 조봉암의 진보당에 입당한 후 당 부위원장 역임하였다. 김달호는 진보당 사건으로 수감되었다가 4·19 혁명 이후 석방되었고, 1960년에 혁신계를 규합하여 사회대중당을 창당하는데 깊이 관여한다. 사회대중당은 결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 60년 7월 29일 총선거에서 참여하였으나 참패한다. 이후 사회대중당은 김달호계의 진보당 세력과 반대 세력으로 분열된다. 김달호는 5대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김달호계만이 1960년 11월 24일 사회대중당 결당식 행사를 치른다. 사회대중당의 주요간부들은 2대악법반대투쟁과 영세중립화주장 등을 전개하였으나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법 제6조 위반으로 처벌받았다(중앙사회대중당사건).⁵³⁾ 사회대중당도 <포고령(1961년 5월 22일)>에 의해 해체되었다.⁵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중앙사회대중당 사건과 관련한 재심에서 고(故) 김달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1. 09. 09).⁵⁵⁾ 사회대중당의 통일방안은 평화유지를 위해 중립국 형태의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것으로서 북한이 당시 주장하던 연방제 통일방안과는 유사하지 않으며, 이들의 주장이 당시 정부의 입장과 어긋난 것이기는 했지만 헌법상 보장된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6. 정해룡 선생에 대한 재판들

53) 한국혁명재판사 제3집, 679쪽 이하.

54) 1997년 대법원은 범민련남측본부 결성식에 대한 참가가 북한활동의 찬양동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피고인의 정치적 경력을 열거하는 부분에서 사회대중당을 “공산주의 혁신정당인 사회대중당”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와 공산주의를 구별하지도 못하거나 구별을 애써 외면하는 법조의 무의식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대법원판결 1997.6.13, 선고 96도2606)

5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04072469>

정해룡 선생의 정치적 행로는 여러 모로 한국의 진보정치의 탄생과 소멸의 과정이었다.⁵⁶⁾ 선생의 사후 진보를 표방하는 제도권 정당으로서 민중당(民衆黨)이 출범하기까지는 20여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해방 이후 정해룡 선생은 여운형 선생이 주도하였던 <근로인민당>에 재정부장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1947년 여운형 선생의 서거 이후에 근로인민당은 쇠락하였고, 정해룡 선생도 낙향하여 특별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1957년 이른바 위장귀순 간첩 박정호 사건(근로인민당재건사건)⁵⁷⁾에 연루되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해룡 선생은 4.19 혁명 이후 사회대중당의 후보로 7월 총선거에서 전남 보성에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선거후 내분에 휩싸인 사회대중당에서 이탈한 세력들이 1961년에 통일사회당을 창당하는데 정해룡 선생은 통일사회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으로 활약하였다. 통일사회당은 민주적 사회주의와 평화통일론을 표방하였으며, 정해룡 선생은 나중에 영세중립화통일론과 2대악법반대투쟁과 관련하여 특수범죄처벌법 제6조 위반으로 1962년 광주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⁵⁸⁾ 앞서 예시한 혁신계에 대한 최근의 무죄판결들에 비추어 정해룡 선생의 정치활동도 온전하게 복원하고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성해룡 선생은 농일사회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후 사실상 첨거생활을 하다가 한 국정치의 주류에서 일탈한 서민호의 대중당(1967)에 관여하게 되었다. 서민호는 창당 대회에서 소위 용공발언 때문에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다.⁵⁹⁾ 이 상황을 전후하여 북에 있던 정해룡 선생의 아우 정해진씨가 65년과 67년 두 차례 남파되었다. 이 사건은 나중에 보성가족간첩단사건(1981)의 원인이 되었다.⁶⁰⁾ 정해룡 선생은 69년에 서거하였기 때문에 보성가족간첩단 사건의 고초는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접촉 사건은 소련제 기관총, 정춘상(정해룡의 자)의 월북과 간첩교육, 간첩수행, 거액의 공작금 등과 같이 다른 사례에서 보기 어려운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의 성격은 ‘죽.잃.난.또’에서 잘 드러난다.⁶¹⁾ 간첩의 임무수행으로서 말하자면 상당히 허망하고 허무하다. 아마도 관련자들이 간첩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국가

56) 정해룡의 정치역정에 대해서는 오승룡, <정해룡 평전(2011)>을 참조할 것..

57) 박정호는 1920년대 말에 조선공산당 활동에 관여하였으며, 1930년부터 중국에서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하였다. 박정호는 북한에서 부상급 간부를 지냈으며 1953년 5월 남파되어 위장 자수한 후 정계에 침투하여 활동하다가 1957년 10월 18일 체포되었다. 박정호는 당시 혁신세력을 규합하여 신당을 결성하려던 김경태·오중환 등을 포섭하여 막대한 자금을 배경으로 혁신세력의 통합 공작을 벌였다. 정계거물인 장건상·김성숙·조봉암 등 혁신계 정치인 20여명과 접촉하면서 이른바 신당결성을 유도하였다. 박정호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되어 58년 12월 16일에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고 이듬해 5월 6일에 집행되었다. 대법원은 김달용, 김태형에게는 징역 10년, 김경태와 오중환에게는 각각 징역 8년, 이재춘과 이철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정해룡 등 근로인민당계 13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대법원판결 1958.12.16, 형상 제496호)

58) 광주고법 1962.12.27, 62노 305. 중앙통일사회당사건은 서상일, 김성숙(金星淑), 김성숙(金成淑), 정화암, 이동화를 포함하여 14인의 당간부들이 혁명재판소에 의해 재판을 받았다. 한국혁명재판사 제3집, 831쪽 이하.

59) 서민호는 한일협정에 반대하여 의원직을 사퇴하고 1966년 5월 27일 대중당 창당준비 확대대회에서 한일기본조약의 폐기, 주월 한국군의 철수 등을 주장하는 동시에 “내가 만약 집권한다면 북한의 김일성과 국제기구를 통하거나 해서 면담, 대결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서민호는 일주일 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1966년 12월 27일 서울형사지법은 남북교류와 월남파병반대 주장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김일성과의 면담 부분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자신과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림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과 동등하게 취급했다”는 이유로 서민호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60) 대법원판결 1982. 2. 9, 81도 3040.

61) 사건관련자들이 정해룡 선생의 사망 이후에 난수표를 잃어 버려서 난수표를 또 달라는 취지로 ‘죽.잃.난.또’라는 약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에 대해 구체적인 위험이나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다. 난수표를 잃고 해매는 가족, 시력상실이라는 형벌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⁶²⁾ 친지와 형제로서 조력한 사람들을 지나치게 간혹하게 처벌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단체제의 법질서가 이러한 가로지르기 행동을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무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절대적 관계에 있는 체제와 음모적으로 결합하는 행동을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해룡 선생의 대중당 관여는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치역정의 필연적 종착점 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망자의 의도를 다시 분단체제의 천정에 올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해룡 선생을 분단체제를 거부하고 분단의 금기를 깨뜨린 정치인으로 규정해야 할 것 같다. 분단을 극복한 정상적인 정치공간에서 그의 정치적 선택과 운명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V. 맷음말

마지막으로 두서없이 떠오르는 단상을 피력하면서 이야기를 맺어야 하겠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혁신계 인사들의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간첩단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보고서를 다시 읽음으로써 한국현대사를 새로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뉴라이트들은 이명박 정부 아래서 총궐기하여 역사전쟁을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들을 압축하자면 많은 사건들이 불법체포, 고문과 허위자백에 기초한 잘못된 판결이었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관제간첩, 관제빨갱이, 관제용공분자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다. 피해자들은 판결에 대해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공공적 자유의 차원에서 생각해보자. 재심 무죄판결을 통해서도 우리는 냉전사법을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현재 법원은 가혹한 냉전사법을 적당히 우회하면서 냉전사법을 정상화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부정한다. 본질적으로 죄가 아닌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찬양·고무·동조로, 방문을 잠입·탈주로, 만남과 연락을 회합·통신으로, 비판적인 도서 보유를 이적표현물죄로, 변혁지향적인 단체설립을 이적단체 결성으로 범죄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악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재심을 통해 국가보안법상 무죄판결을 획득하려는 사람은 내적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 아래 순치된 삶을 선택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가 최상급 인권이라고 전제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만을 명예회복의 길로 환영할 것이다.

지금 한켠에서 진보적인 사회운동가들에 대해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우려

62) 빨치산 활동 중에 총격으로 두 눈의 시력을 잃은 정종희는 1990년 월간중앙이 주최한 논픽션 공모에서 <통일에 거는 광명 친지>라는 작품으로 수상했다.

스럽게 주시하고, 다른 한켠에서 과거 혁신계 정치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혼란을 가중시킨다. 중요한 대목은 특수범죄처벌법상 반국가특수범죄(제6조)가 현재의 국가보안법(제7조)⁶³⁾에 고스란히 살아남아 그악스러운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찬양·고무·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혁신계 인사들의 과거 행위가 지금 보니 찬양·고무·동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법원이야말로 우리가 요구하는 자유를 더욱 불온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법원은 이상한 형태로 과거의 역사를 분할해서 소매로 판매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개구멍으로 끌려갔다가 재심을 통해 다시 그 개구멍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도 많이 들었으나 믿기 어려운 것,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법조의 신비스러운 하이테크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를 부정하는 법을 통해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개인에게 분단체제를 변혁할 권리가 있는가? 도대체 개인에게 체제를 꿈꿀 권리가 있는가? 지금 살고 있는 체제가 탑탁지 않으면 개인은 떠나거나 아니면 닥치고 복종해야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떠나는 것도, 맹종도 답이 아니다. 민주주의자는 변혁을 꿈꾸는 참여자이다. 체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체제에 대한 권리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자유와 사회의 기성구조들이 인간의 공동선에 온전하게 부합하도록 그러한 구조들을 영구적으로 쇄신시키는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이 투쟁을 멈추고 타협함으로써 인간을 둘러싼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한다. 그것이 구조이고 체제이다. 이러한 체제를 운명으로 수용하고 그저 시간이나 탕진하는 태도, 그러한 체제를 승배하는 행태야말로 제도적 물신주의이다.⁶⁴⁾ 기득권자들과 그들의 언론들은 제도적 물신주의에 매몰되라고 날마다 주문을 왔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 세계를 더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투쟁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세계인권선언도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⁶⁵⁾ 민주주의와 인권이 완전하게 실현된 사회와 세계를 향하여 투쟁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 떠나지 않으면서도 체제와의 투쟁을 멈추지 않는 이들이 제3세력이다. 참여하지만 투항하지 않는 인간, 이러한 유형의 인간을 풍부하게 간직한 사회에는 미래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냉전체제는 이러한 제3세력을 지배의 제물로 삼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일본의 1960년대와 정훈상 사건

권혁태

(성공회대 일본학)

1. 들어가는 말

“당신들이시여! 여기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서 운명의 날을 노심초사 기다리는 한 人間이 있습니다. 自由는 그 누구에게도 양도 할 수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곧 천부 人權이거늘, 20여 성상을 自由를 유린당한 체 암흑의 世上에서 人生行路를 걷다가 脫出하여 日本땅에 온 青年입니다. 전정 自由가 그리워 生死를 초월했고 父母가 그리워 生死를 초월해서 脱出한 人間이 있다면 당신들은 그 사도를 그냥 버려 두지 안을 줄 믿고 호소를 합니다. 저는 20년 전 부모와 이별하고 自由를 유린당한 체 모든 것을 그리워하며 生活하다가 이역만리 日本땅에 왔습니다. 당신들이시여 이 젊은 중생의 뜻을 가륵하게 여기시여 青春을 불살을 이정표를 救해주십시오. 사선을 돌파한 人間에게 父母를 만나게 해주시고 꺼지려는 등불에 기름을 쳐 주십시오. 拘置所에서 運命의 날을 기다리는 한 青年이 당신들에게 호소합니다. 난필을 용서바랍니다. 朝鮮人 丁勲相” (원문대로)¹⁾

“일본당국은 나를 ‘출입국관리령’ 위반의 혐의로 형사재판에 걸었습니다. 나는 일본당국에 내가 일본에 거주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신 북조선에 가기 위해 온 것이라 설명하고 북조선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당국은 나를 체포해 고베 구치소에 감금한데다가 재판에 회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는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있는 그대로 밝혀 일본정부와 일본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일본정부 및 일본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도주의 및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존중한다면 내가 하루라도 빨리 사회주의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돌아가 어린 시절에 헤어진 부모님과 재회해 마음껏 공부하고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십시오. 만일 남조선에 강제 송환된다면 나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며 그 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²⁾

63)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4) 브라질 출신의 법철학자 용거는 정치를 운명거부로서 민주주의(democracy as anti-politics)로 규정한다. Unger, Roberto M., *The Self Awakened*,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182쪽.

65)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social and international order)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1) 日本機関紙協会兵庫支部編, 『共和国への道を日本に求めて-丁勲相(政治亡命)青年の手記』, 日朝協会兵庫県支部連絡会, 1970.1.15., 뒷표지.

2) 日本機関紙協会兵庫支部編, 『共和国への道を日本に求めて-丁勲相(政治亡命)青年の手記』, 日朝協会兵庫県支部連絡회, 1970.1.15., 29쪽.

- 1969년 8월 6일에 한 청년이 고베 항구에 정박 중이던 한국선적 배 유영호(裕榮號)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인근에 정박 중이던 신와마루(親和丸)에 도움을 요청해 구조되었다. 이 청년은 바로 '자수' 의사를 밝히고 체포된 후, 일본 '거주'를 위해 '밀입국'한 것이 아니라,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기 위해 일본에 왔음을 밝혔다. 이 청년은 바로 구금된 상태로 8월 13일 기소되어 1970년 12월 19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아 석방되어 고베입국관리소에 다시 '구금'되었다가 고베입관의 자비출국허가조치로 12월 26일 하네다에서 모스크바 행 비행기로 일본을 벗어나 12월 29일 무사히 평양에 도착하였다. 정훈상(丁勳相)이라는 이 청년은 1943년 12월 9일생으로 중앙대학 교 재학 중 입대한 현역 군인으로 탈영 후 이북에 거주하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 경유지로 일본을 택했음을 밝혔다.
- 정훈상의 성장, 탈영, 일본 입경, 그리고 북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선 현재 한국 및 일본 그 어디에도 공적으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에 관한 기사는 한국 신문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당시 일본 신문에 보도된 몇 개의 단편적인 신문기사가 존재할 뿐이지만 이 신문 기사만으로는 정훈상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는 어렵다.
- 하지만 몇 가지 흔적은 확인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고베에 있는 '효코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회'(兵庫在日朝鮮人の人権を守る会)는 정훈상의 구원활동을 계기로 1971년에 만들어진 단체로 주로 전후보상 문제와 출입국관리체제, 그리고 외국인등록법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³⁾ 또 1968년에 개설된 고베합동법률사무소는 이른바 인권변호로 유명한 곳인데, 누리집에서 꽃다발과 함께 양손을 들고 있는 정훈상의 사진과 함께 "부모가 기다리는 북조선에 보낸 사상초의 승리사건(1970)"이라 소개하고 있다.⁴⁾ 재일조선인 연구자로 유명한 '무궁화 모임'(무쿠게노카이, むくげの会)의 대표인 히다 유이치(飛田雄一)는 "한국군을 탈영해서 북조선에 망명하려 고베로 도망쳐온 정훈상 씨 사건이 있다. 언제 공판이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도 방청에 가서 고베지방재판소 마당에서 정훈상씨가 지원자들을 앞에 두고 힘차게 연설하고 있던 모습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⁵⁾고 회상하고 있다. 또 정훈상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미야자키 시게키(宮崎繁樹)는 1970년 11월에 출간한 저서 『출입국관리-현대의 '쇄국'』에서 정훈상 사건을 다루고 있다.⁶⁾
-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당시나 지금이나 다른 여류 사건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훈상 사건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거나 단편적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한국으로부터의 밀항과 망명요구는 적지 않게 존재했었고 또한 이를 현재의 시점에서 되돌아보는 회상록이나 운동사 연구에서 성찰적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

으면서도 유독 정훈상 사건에 대한 회상이나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면 방대한 자료를 동원해 1960-70년대 일본 사회운동에 대한 언설사를 다룬 오구마 에이지의 『1968』에서도 정훈상 사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 그 이유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다음 두 가지 자료에 의거해 정훈상 사건에 접근하고자 한다. 하나는 일본기관지협회 효고(兵庫) 지부가 편집한 『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일본에서 찾으려-정훈상(정치망명) 청년의 수기』(1970)이다. 이 자료집은 정훈상 씨가 집필한 망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수기와 함께 변호단 등의 성명, 그리고 사진 등이 담겨 있는 소책자이다.⁷⁾ 또 하나의 자료는 정훈상청년정치망명사건변호단(고베합동법률사무소)이 정리한 『정훈상청년정치망명사건(자료집)』(1971년)이다. 등사판 인쇄로 약 500쪽에 이르는 이 책자에는 정훈상 사건의 재판 기록과 함께 각종 기관 등의 성명서가 담겨 있다.⁸⁾ 재판을 유리하게 전개하게 위해(즉 망명권 문제와 북한 입국) 발언한 자료가 중심이 되어 있어 그 자체가 '진실'이라 할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이 자료를 통해 정훈상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정된 자료를 동원해 정훈상 개인의 밀항과 북행의 배경을 밝히고 정훈상 사건을 둘러싼 일본 사회와 조선인 측간의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면서, 정훈상 사건에 대해 일본 사회의 반응이 혹은 현재의 회상이 상대적으로 미온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를 시론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2. 정훈상이 밝힌 밀항과 북행 동기

- 법정에서 밝힌 공술조서와 수기 등에 따라 그의 '망명' 과정을 재구성해보자. 정훈상은 서울시 명륜동에 1943년 12월 9일생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정해진(丁海珍), 어머니는 전예준(田禮畯, 신의주 출신?)이고 형은 정국상(丁國相), 남동생은 정보상(丁保相), 그리고 여동생 정명숙(丁明叔)이다. 아버지 정해진은 도쿄 대학 철학과에서 공부했고 어머니는 이화여자대학을 졸업했다. 사회주의운동에 뛰어들었던 아버지는 훈상이 5살 때, 체포되어 형무소에 복역하게 되었고 훈상은 본적지인 전라남도 보성군에 거처를 옮겨 형 정국상과 함께 할머니 손에 컸다. 부모님은 남동생과 여동생을 데리고 한국 전쟁 기에 북행을 택했고, 훈상은 본적지에서 본적지인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會泉) 면 봉강리(鳳崗里)에서 살게 되었다.
- 회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성중학교를 거쳐 목포시 소재 국립 목포해양고교 항해과에 진학(1962.4)하였으나, 3학년 진급 시 학비 부족으로 1년 동안 휴학하였고 1966년 3월에 졸업하였다. 학비 조달을 위해 서울 소재 바에서 노래를

3) 神戸電鉄敷設工事朝鮮人犠牲者を調査し追悼する会, 『ニュース』, No.1, 1993.10.25.

4) http://www.kobegodo.jp/about_history.html#s70

5) 飛田雄一, 「難民条約発効より20年一改めて日本の難民政策を考える」『むくげ通信』, 193号, 2002.7.

6) 宮崎繁樹, 『出入国管理-現代の「鎖国」』, 三省堂, 1970.

7) 日本機関紙協会兵庫支部編, 『共和国への道を日本に求めて-丁勳相(政治亡命)青年の手記』, 日朝協会兵庫県支部連絡会, 1970.1.15.

8) 丁勳相青年政治亡命事件弁護団, 『丁勳相青年政治亡命事件(資料集)』, 1971.2.

부르거나 부산 소재 당구장에서 일을 해 학비를 조달해 1968년 4월에 중학대학교 법정학부 신문학과에 입학하였고 같은 해 12월 6일에 입대하였다. 가세가 기울어진 것은 백부(丁海龍)가 정치적 탄압 속에서 국회의원에 옥중 출마했으나 선거에 낙선하는 등의 여파가 있었기 때문이다. 군대에 입대한 것은 부모님이 이복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었기 때문이다. 군대에 입대해 휴전선 부근으로 배치되면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월북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광주 소재 31사단에서 두 달간의 훈련을 마치고 1969년 2월 6일에 강원도 홍천군 소재 제251수송부대 제 853중대에 수송서무병으로 배속(군번 216064285)되었으나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그래서 일본으로 밀항해 자수해 북한에 보내줄 것을 일본정부에 탄원 하려 결심했다. 6월 22일 휴가를 받아 서울 소재 친척(丁孝相) 집에 7월 2일까지 머무르다가 부산으로 거처를 옮긴 다음, 여관 등을 전전하였고 친구의 형이면서 학교 선배인 차병규(車秉圭)와 우연히 만나 오사카 행 선박 출항 정보를 듣게 되어 유영 후에 비밀리에 승선해 일본에 밀항하게 되었다.

- 그는 『수기』에서 북행을 결심하게 된 까닭으로 아버지의 고문에 대한 기억(형무소 면회시의 기억), 백부에 대한 정치적 탄압, 연좌제적인 차별과 박해 등의 이외에 자신의 '투쟁' 경험을 말하고 있다. 광주상업학교 재학 중이던 1960년에는 4.19 데모에 참가하였던 훈상은 부상을 당해 광주중앙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일을 겪었고, 또 중앙대학교 재학 중에는 '고목회(古木會)'라는 동아리의 회장으로 조직적인 활동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가 북행을 결심한 동기 중에 가장 큰 것은 연좌제적 차별이었던 듯하다. 예를 들면 해양학교 졸업생에게 배부되는 여권을 겸한 선원수첩이 자신에게만 교부되지 않았던 충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출세는커녕 발을 땅에 불이고 살 장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자유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것임과 동시에 빼앗겨서도 안 되는 천부의 인권일 터인데, 그 놈들은 나에게 아무런 주저도 없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진정으로 자유가 그리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는 자유를!"⁹⁾

- 결과적으로는 그의 목적은 밀항과 체포, 구금, 그리고 강제추방 형식으로 북행에 성공함으로써 달성되었다. 하지만 그와 그의 지원단체가 주장했던 망명을 일본의 사법당국이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출입국 관리령 위반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내려졌고(중간에 보석조치) 석방 후에는 출입국 관리소에 구금되는 등 (중간에 가방면)의 조치가 취해진 후, 정치적 판단과 교섭을 거쳐 강제추방(엄밀하게는 자비출국)의 절차를 밟아 북행에 성공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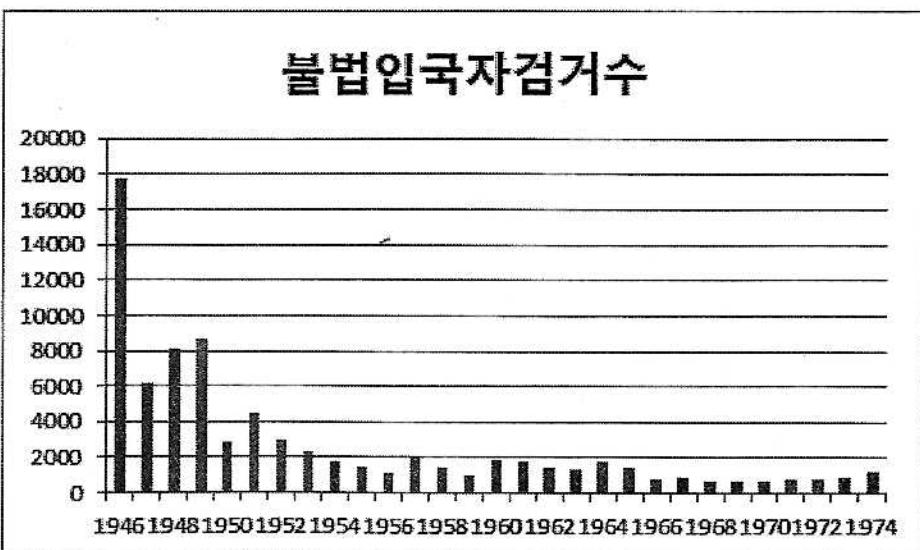
<표> 정훈상 관련 연표

연월	~ 사항	연월	사항
1943.	서울 명륜동에서 출생	1969.8.13	출입국관리령 위반으로 기소
1948(?)	본적지 보성으로 전거	1970.1.17	홋카이도 비바이(美唄)시에서 숙부 정해숙(丁海淑) 면담
1950.4-1956.3	본적지 회천면 소학교 입학 졸업	1970.2.23	'정훈상(정치망명) 청년을 지키는 모임' 결성
1956.4 -1959.3	보성중학교 입학 졸업	1970.5.23	정훈상 부모와 여동생 편지 도착
1959.4-1960.3	학비 부족으로 가사 도움	1970.10.1	보석허가 결정 후 고베 입국관리소 신변 수용
1960.4-61.3	광주상업고교 입학 및 종퇴	1970.10.6	고베입관 일시 가방면
1961.4	국립 목포 해양고교 입학	1970.10.21	고베입관 가방면 조치
1963.3	2학년 수료 후 학비부족으로 1년간 조모집에서 양돈업 종사	1970.12.19	금고6월, 집행유예 1년 연도
1964.4-1965.3	목포 해양고교 복학 및 졸업	1970.12.22	법무성 교섭, 12.26 출국결정
1965.4 이후	부산 소재 당구장에서 노동하며 음악공부	1970.12.23	고베 입관에 자비출국 허가 신청 및 허가
1966.4 이후	서울 소재 바에서 가수 생활	1970.12.24	환승회
1968.4	중앙대학교 신문학과 입학	1970.12.25	도쿄 이동, 소련 비자 취득
1968.12	육군입대, 홍천군 소재 수송부대 배속	1970.12.26	하네다발 모스크바 행 비행기 탑승(형사상소권 방기, 행정소송 취하)
1969.6.22	탈영, 7.2 부산행	1970.12.29	평양도착
1969.8.4	부산항 정박중인 유영호에 비밀승선		
1969.8.6	고베에 입항, 자수 후 정치망명 신청		

9) 日本機関紙協会兵庫支部編, 『共和国への道を日本に求めて-丁勲相(政治亡命)青年の手記』, 日朝協会兵庫県支部連絡会, 1970.1.15., 14쪽.

3. 출입국관리령과 ‘밀항’

○ 일본의 ‘패전’, 한반도의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으로 점철되는 탈식민화와 ‘국민국가’ 성립의 과정에서 이른바 ‘인류’(人流)가 내외의 조건과 맞물려 복잡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식민자들의 일본 귀환의 흐름(이른바 ‘히카아게’)과 피식민자들의 조국 귀환이 1945년 8월 15일 직후의 흐름이었다면 1940년대 후반 이후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또 하나의 인류, 혹은 역류가 진행된다(그림 1). 대체로 남한 정치정세의 불안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는 이 흐름은 거주권이라는 재일조선인의 당연한 권리가 전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령을 발동해 오무라 수용소에 이들을 수용하고 남한에 이들을 강제송환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이런 흐름과 동시에 1950년대 후반이 되면 일본에서 한반도의 북쪽으로 이동하는 또 하나의 흐름이 가해진다(‘귀국사업’). 그렇다면 1950년대 후반 이후 한반도의 남쪽에서 일본으로 이동하는 인류는 일본에서 한반도의 북쪽으로 이동하는 또 하나의 인류와 연동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일본의 인류는 재일조선인 생활 네트워크 권내에서의 이동이라는 기준의 성격과 아울러 1959년 귀국 사업 이후부터는 북행을 전제로 일본 ‘밀항’이라는 측면도 동시에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귀국사업을 통해 북행을 선택한 많은 조선인 중에 적지 않은 밀항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오무라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한국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북행을 선택하여 했다는 것은 이 같은 사실을 반증한다.



[그림 1] 出入国管理 / 法務省入国管理局 / 大蔵省印刷局 / 1976.

- 이런 북행을 전제로 한 일본 ‘밀항’을 가장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훈상이다. 예를 들면 정훈상 자신도 일본을 선택한 동기를 ‘북행’에 보다 유리했기 때문이었음을 처음부터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일본은 북선과 한국 간의 문제에 관해서 중립적인 입장이고 북선에 귀환하려는 사람들을 송환하고 있다고 들어서 일본에 가면 북선에 갈 수 있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였고 “밀항으로 일본에 가 자수해서 북선에 보내달라고 일본 정부에 탄원하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¹⁰⁾ 따라서 일본 거주를 위해 일본으로 밀항한 사람들과 달리 북한으로 입국하기 위해 일본을 경유지로 택한 정훈상의 경우는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정훈상이 말하는 것처럼 일본은 중립적인 국가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에는 정치적 망명을 위한 법적 제도도 없었고 또 망명자를 받아들일만한 사회적 분위기도 없었기 때문이다.
- 1962년 5월 28일 중의원법무위원회에서 나카가키 구니오(中垣國男) 법무부장관은 “정치망명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에 강제 송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또한 입국관리국 국장은 “정치 망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적 배려에 따라서 박해가 기다리는 곳에는 송환하지 않는 것을 기본선으로 한다”고 답변하고 있기는 하다.¹¹⁾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강제송환 여부를 “인도적”이라는 이름하에 정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일 뿐, 권리로서의 망명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 즉 메이지 시대에 제정되었던 도망범죄인인도조례(1888년 칙령 제42호)를 대신해 1953년에 시행된 도망범죄인인도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치범 불인도 원칙’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혼마 히로시(本間浩)는 “난민조약에 관해 명확한 법적인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던 당시에 박해의 염려가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일본 정부에 의한 보호를 요청했을 경우에 그 법적 근거로서 정치범죄인 불인도 원칙이 자주 주장되었다. 난민보호를 위한 법적 정비가 뒤쳐져 있는 일본에서는 이 원칙 이외에는 기댈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¹²⁾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밀항이라는 행위는 일본의 법규 내에서는 오직 출입국관리령의 ‘불법입국죄’로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게다가 형사처벌이 만료된 후에도 출입국관리령이 적시하는 수용소(한국인/조선인은 오무라 수용소, 중국인은 요코하마 수용소)에 수용한 다음, 자비출국이나 강제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하지만 정훈상의 경우, 다른 밀항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다. 정훈상 자신이 밀항 직후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밝히고 있듯이 밀항이 일본 거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북행을 위한 경유지이었다는 점이다. 정훈상에

10) 丁勲相青年政治亡命事件弁護団,『丁勲相青年政治亡命事件(資料集)』, 1971.2.31.-32쪽.

11) 宮崎繁樹,『出入国管理-現代の「鎖国」』,三省堂, 1970, 16쪽.

12) 本間浩,『難民問題とは何か』, 岩波新書, 1990, 35쪽. 「難民保護に関して明確な法的原則が定められていなかつた当時、迫害のおそれを主張する者が、日本の政府による保護を要求する場合に、その法的根拠として政治犯罪人不引き渡し原則の適用がしばしば主張された。難民保護のための法的整備がたち遅れていた日本では、この原則以外には、頼りになる根拠がなかったのである。」

게는 정치적 망명으로서의 권리 주장도 북행을 위한 권리 주장이었다. 따라서 북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일본의 사법당국이 그의 밀항을 망명으로 인정하는가 여부는 정훈상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 일본을 경유해 북을 선택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에 반대해 일본에 입국한 후, 탈영했던 미군 소속 한국인인 김진수의 경우는 최종적으로는 훗카이도에서 밀항선에 승선해 소련을 경유해 스웨덴으로 정치망명하게 되지만,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망명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었다. 또 베트남 전쟁에 반대해 한국군을 탈영해 일본으로 밀항해왔던 한국군 병사 김동희는 물론 재일조선인 출신으로 일본 거주를 희망했지만, 결국 소련을 경유해 북한으로 망명한다. 김진수는 미군 소속이었기 때문에 미일안보조약과 지위협정으로 출입국관리령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만일 체포된다 해도 일본이 김진수를 불법입국 혐의로 처벌할 수 없었지만, 김동희의 경우는 한국군이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령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을 살고 오무라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북행을 선택한 케이스였다.¹³⁾

4. 어긋남

- 정훈상 사건을 바라보는데 있어 물론 일본의 사법당국이 망명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정훈상 자신이 줄곧 북행을 주장했었고 결과적으로 북행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일본 측의 대응에서는 망명 여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훈상 측과, 망명권 확보를 강제송환저지와 북행을 위한 중요한 법적 권리로 상정하는 지원자 측의 사이의 미묘한 시각 차이는 이렇게 해서 발생한다.
- 정훈상 관련 성명서를 보면, 일본 측과 조선 측(정상훈을 포함) 간에 미묘한 어긋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정훈상은 체포 직후 법정에 제출한 귀국요구서(1969년 8월 16일)에서 “나는 일본에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화국에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그는 밀항을 북행을 위한 수단(경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밀항 동기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망명이라고 해도 그는 출입국관리령 위반에 대한 형사적 판단보다도 북행이라는 목적에 무게를 두었다.
- 이 같은 입장은 정훈상 지원에 적극적이었던 조선총련에게서도 발견된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효고현본부 상임위원회는 8월 16일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 당국이 정훈상을 “남조선으로 강제송환”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령 위반으

로 형사재판을 행해 신병을 고베 구치소에 감금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에 나선 점을 비난하고 “인도주의와 국제관례에 입각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본인의 희망대로” 귀국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도 성명을 발표하여(1970년 5월 23일), “사토 정부는 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남조선 괴뢰군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사는 길을 찾아 공화국 북반부에 오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던 전 남조선 괴뢰군 병사 정훈상 청년을 체포해 1년 가까이 감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적 ‘재판’을 열어 그를 죽음이 기다리는 남조선에 인도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일본당국은 또한 정훈상 청년에 대한 범죄적 ‘재판’을 당장 중지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본인의 희망대로 공화국 북반부에 무조건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정상훈 측(정훈상 본인, 조선총련, 북한 정부)은 출입국관리령 위반에 입각한 형사처벌과 출입국관리소 수용이라는 일본 정부의 조치를 정치적 망명 부정이라는 차원에서 문제 삼고 있기 보다는 이 같은 일본정부의 조치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남조선에 강제송환”하기 위한 절차라는 차원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정훈상을 지원하는 변호단 등은 다소 다르다. 일조협회 효고 현 지부 연합회가 9월 4일에 발표한 성명에서는 “우리나라에 망명 입국하였는데도 고베지방검찰청은 이 청년을 밀입국자로 기소하였고 고베입국관리사무소도 또 관리령 위반 심사를 개시하였고 심사결과에 따라서는 판결 후, 오무라 수용소에 보내 ‘한국’에 송환될”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상임이사회는 “정의와 인도의 이름으로 관계당국에 정훈상 청년을 정치망명자로서 다룰 것을 요구함과 함께 정훈상 청년의 염원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지원할 것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10월 15일, 정훈상청년정치망명사건변호단은 성명을 통해 “정치망명 내지 정치난민으로서 보호를 요구하고 입국한 정훈상에 대해 이런 부당한 처벌과 ‘한국’으로 강제송환으로 답하는 것은 지극히 비인도적 조치”이니 세계인권선언과 일본국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 정훈상의 “정치망명을 인정하고 신속히 본인이 희망하는 공화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 정훈상에 대한 지원 운동이 일본 사회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만큼은 분명하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정훈상(정치망명)을 자기는 모임’이 결성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도 만들어졌으며 또한 200명 이상에 달하는 대규모 변호단이 결성된 점을 보면 정훈상 사건에 대한 당시 일본 사회의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관심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런 제한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도 정훈상 사건에 대한 회상이나 기록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정훈상을 지원한 일본 내 그룹은 조선총련, 일조협회, 일본 기관지협회 등이다. 일본기관지협회(日本機関紙協会)는 노조 및 시민단체 등의 기관지 발행 및 발전을 맡는 단체로 1947년에 결성되었고 일본 공산당의 외곽단체이다. 또한 발행기관인 일조협회는 조선인 공산당원의 일본공산당 탈당에 맞추어 일본공산당

13) 베트남 반전 탈영병사와 망명 문제에 대해서는 권혁태, 「국경안에서 탈국경을 상상하는 법 : 일본의 베트남 반전 운동과 탈영병사」, 『동방학지』, 제157호, 2012년.

의 대조선 친선 교류기관으로 만들어진 기관으로 일본 공산당에 가깝다. 위에서 말한 김동희 등에 대한 지원운동이 주로 '베트남에게 평화를! 시민연합'(베헤이렌) 같은 비공산당 시민단체 주도로 이루어진 데 반해, 정훈상의 경우는 본인의 북행 요구의 영향 때문인지 초기부터 정치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정치적 그룹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일본공산당과 조선노동당-조선총련이라는 사회주의 국제연대의 기준 틀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성이 크다. 따라서 북일 정부 간 관계라는 요인 이외에 조선노동당과 일본공산당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 때문에 다른 망명 사건과는 달리, 국회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또 지금까지도 회상이나 기록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탈냉전·분단'시대의 가족사쓰기: 이산복합가족의 경험을 중심으로¹⁾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

1. 머리말

20세기 한국가족은 가족구성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구성원의 규모라는 측면에서는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변화되었고, 최근에는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런 한국 가족의 변동에 관한 설명은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어서, 한국의 가족들이 실제로 겪은 역사적 경험과는 많은 괴리가 있다.

한국의 근대가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생략될 수 없는 핵심적 특징 중의 하나가 이산과 '유족현상'이다. 한국사회가 겪은 식민지화와 광복, 그에 뒤이은 분단과 전쟁은 많은 인구를 지리적으로 이동시켰을 뿐 아니라,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 생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단위 이주도 많았지만, 가족 구성원들끼리 흩어지고 새롭게 형성된 영토적 경계에 의해 교통과 통신이 단절됨으로써, 생사를 모르거나 서로 그리워하면서 만나지도 못하는 '이산가족'이 대규모로 만들어졌다. '천만 이산가족'이라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 자료에 입각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산가족이 우리 주변에 매우 흔하다는 것을 분명하다.

광복이 식민지화로 인한 이산의 부분적 회복의 계기였다면, 광복과 함께 찾아온 분단은 새로운 이산의 계기이기도 했다.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동할 수 없는 경계가 주어졌다. 이산가족은 도시화와 공업화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이 경우에는 항상 자유롭게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가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분단과 전쟁이 남긴 이산의 문제는 이와 다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루어진 대규모 피난, 납치, 포로, 월경은 이산을 재구성했다. 식민지적 이산이 대체로 연해주와 미주이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국'의 영역내에서 이루어져 적대의 성격이 약했다면, 분단 이산은 적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산가족들이 서로 통신 교통하는 것은 금지되었고, 경계를 넘는 행위는 매우 높은 위험을 동반했다. 이것이 새로운 국민국가형성과 함께 진행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단국가형성은 의식있는 국가형성주체의 체제선택과 국가권력에 의한 가족구성원들의 강제적 성원화, 그리고 타자로 규정된 집

1) 이 글은 발표용 초고이므로 인용을 삼가주기 바랍니다.

단의 배제의 복합적 과정이었다.

한국의 분단국가형성은 독일과는 달리 내전과 국제전을 동반하면서 진행되었다. 월경과 유족화현상은 남한사회에 그치지 않고 북한과 중국, 또는 참전한 국가들에 확산되었다. 전쟁과정에서 많은 인구가 희생되고 살아남은 가족구성원들은 '냉전·분단체제'하에서 '유족'으로 어렵게 살아가야 했으며, 전쟁고아들은 다른 나라도 입양되었고, 전쟁미망인의 일부도 국제이주를 경험하였다.

가족의 이산과 생존인구의 유족화 현상은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의 원리와 사회공동체로서의 가족의 원리를 정면으로 충돌시켜 그 고통과 피해를 주민들에게 전가시킨 결과이다. 여기에는 '희생자/생존자'라는 맥락과 '체제/반체제'라는 맥락이 서로 교차되어 질적으로 상이한 인구집단이 만들어진다. 분단국가에서 월경은 그것의 주체에게는 체제선택행위이지만, 원래의 생활장소에 남아있는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엄청난 생존의 부담을 지워준다. 국가는 월경 중에서 친체제적 월경은 칭송하고 반체제적 월경은 배척하므로 월경자나 잔류자들 모두 국가가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간접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으로 월경을 포장하게 된다. 이런 월경의 논리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납치의 논리이다. 잔류자들에게 자신의 가족구성원의 월경은 커다란 위협이므로 가급적 그것을 월경이 아닌 납치로 해석하게 된다. 역으로 납치된 사람도 맥락에 따라 자발적 월경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월경을 경험한 자나 그 잔류가족들은 국가권력의 잠정적 감시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탈북자들 중에 한국전쟁기에 가족성원 중 일부가 월남자여서 이후 북한 당국으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전쟁은 가족의 이산을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죽임과 죽음을 통해 유족을 만들었다. 국가는 그 죽음이 국가를 위한 것인가 아닌가를 질문한다. 국가는 때때로 죽임의 주체이지만, 대체로 그것의 책임은 무시되고, 죽음에 대한 평가자로 군림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는 죽음을 위계화하며, 죽음의 일부는 현장하고, 죽음의 일부는 배제한다. 죽음의 위계화는 죽은 당사자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에게 연장된다. 칭송된 죽음에 대해서는 '보훈'이 이루어지나, 배제된 죽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가족구성원들에 묻는 연좌제가 실시되었다.

분단체제하의 국가에게 중요한 것은 삶과 죽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존재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적대하는 체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행방불명자들을 더 세심한 관찰과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기 때문에 잔류자들은 종종 행방불명자를 죽은 자로 만들고 자신은 유족이 되려고 한다.

분단체제하에서 국가권력은 가족이산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기보다는 이를 활용하여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남북의 국가권력은 적어도 1970년대까지의 냉전분단시기에 이산가족의 잠재적 연결망을 정보획득과 체제선전의 통로로 적극 활용하였다. 이 시기까지 이루어진 '간첩'프로젝트는 대부분 '이산가족'의 공동체적 원리를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관계가 이산으로 인한 고통과 그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활용되어 다시 한번 뒤얽히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사회가 민주화되고, 세계적 탈냉전에 힘입어 냉전분단이 완화되면서, 이산가족들의 상봉요구가 커졌다. 또 전쟁유족들은 과거의 희생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2000년부터 이산가족들에게는 상봉의 기회가, 유족들에게는 진실규명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2000년부터 이루어진 남북이산가족 상봉프로젝트, 그리고 2005년부터 진행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진실규명 프로젝트가 이를 대변한다. 유족들은 진실규명과 함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재현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의 공식적인 진상규명위원회나 구술증언 학술 프로젝트를 통해 제공받았다. 이와 함께 월경경험을 가진 가족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또 해당 가족들은 진실의 복원을 위하여, 또는 복원된 진실에 기초하여 가족사를 쓰고 싶은 요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산으로 인한 가족상봉이나 고향방문, 그리고 희생으로 인한 유족들의 망자추모가 한국사회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이며, 한국가족의 중요한 사회적 특징의 하나이다. 이산은 가족공동체를 해체했으나 역설적으로 가족을 매우 중요한 삶의 단위로 재생산했다. 따라서 한국의 가족에 대한 연구는 가족 그 자체로가 아니라 국가와 가족의 관계라는 시각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고, 또한 해당 가족의 구체적인 생활공간이었던 지역의 사회변동과 결합되어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일제의 식민지지배 말기에 보성에서 민족교육과 해방직후의 정치활동을 함께 했던 정해룡과 그 가족과 자녀들의 부친에 대한 기억, 기념, 가족사쓰기에 대한 사회사적 분석을 하려는 것이다. 정해룡은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보성 회천에서 민족교육활동과 혁신계 정치활동을 하였고, 그의 동생인 정해진은 1940년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하고 해방 후에 사회운동을 하다가 한국전쟁과정에서 월북하였고, 1960년대에 '대남사업'에 참여한 사람이다. 이들은 형제간 이산가족으로 이들의 활동에 의해 그 자녀들의 월북, 처형, 수형 등이 이어진다. 정해룡의 가족사는 가족 구성원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제하 민족교육의 협력자였던 윤윤기의 활동과 희생을 포함한다. 윤윤기는 1930년대 후반기부터 1950년까지 정해룡과 함께 민족교육과 사회활동을 같이 전개하였고, 한국전쟁 초기에 희생되었다. 그의 자녀들도 분단체제가 가져다 주는 다양한 경험과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부친에 대한 기념사업과 전기 쓰기를 시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의 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긴장과 갈등을 겪고 있다. 기억투쟁은 국가와 개인 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나는 이 사례분석을 통해 분단체제하에서 그것을 넘어서려는 활동에 대한 기억과 기념, 역사쓰기가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현재의 삶의 방식의 일부임을 밝힐 것이다. 여기에는 월경(월북, 남파)에 대한 국가적 통제, 분단체제하에서의 현재적 권위와 잠재적 권위의 균열, 기념비 만들기와 전기 쓰기의 사회적 의미 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가 포함된다.

2. 이산복합과 경험의 재현

1) 이산가족과 상봉프로젝트

역사적으로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녹일과 베트남, 한국등에서 분단국이 출현했다. 분단국은 냉전분단(세계대전후 내전없이 분단), 전쟁분단(전쟁후 내전을 거치면서, 그러나 전장경험은 없는 분단), 전장분단(내전을 겪고, 그 과정에서 전장이 되었던 경험에 있는 분단)으로 구분된다.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 분단의 극복이나 해소과정이 다르다.

독일의 경우, 내전을 겪지 않고, 분단-냉전-탈냉전 통일의 궤적을 그렸다면, 베트남은 분단-전쟁(전장)-통일-탈냉전의 궤적을 그리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내전에 이은 분단의 길을 걸었는데, 중국의 전장이었던 반면, 대만은 전장은 아니었다. 이들도 냉전 분단을 거쳐 탈냉전 분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분단-전쟁-냉전 분단을 거쳐 탈냉전 분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해방후 한국사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분단과 통일(x), 전쟁과 평화(y)라는 두 개의 축이 존재하고 이들 사이에 다양한 조합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념형적으로 보면, 분단과 전쟁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와 통일과 평화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두 개의 극점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두 축은 상호독립적이어서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분단과 통일 사이에는 교류와 협력의 정도에 따라 광범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전쟁과 평화사이에 존재하는 냉전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이산가족은 역사적 개념이자 이론적 개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산가족은 한국전쟁의 휴전협상과정에서 '실향사민'이라는 용어로 등장했다. 이것은 '6.25 발발직전에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분계선 이남이나 이북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다른 지역으로 귀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의미했다. 김귀옥의 연구(2008)에 따르면, 휴전협상기에 비교적 중립적이던 실향사민의 개념은 1956년에 이르러 '납북자'로 축소되었고, 1976년도의 대한적십자사의 이산가족백서에서도 냉전적 맥락에서 이산가족을 규정하였다.

냉전적 이산가족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산을 만들어낸 월경의 자발성과 강제성이었다. 월북과 납북, 월납과 납남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월경자와 잔류자 사이에, 당사자와 유족사이에 자발성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월경자는 자발적 의지를 강조하는 반면, 잔류자는 비자발적 강제성을 강조한다. 가족구성원들이 각자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리화하기 때문이다.

2000년 6.15 선언을 계기로 이산가족의 정의나 범위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월남인이나 납북자로 한정되었던 이산가족 개념은 월북자, 인민의용군, 반공포로,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군인이나 그 가족을 포함시키는 광의의 개념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6.15선언은 비전향장기수도 해결해야할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곧 이어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귀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0년 8.15 1

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부터 2007년 제1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까지, 그리고 2005년부터 이루어진 6차례의 화상상봉행사에 참가한 이산가족 중에는 납북자로 알려진 이신가족들이 상당수 포함되었다. 물론 실제 상봉에서 당사자들은 대체로 '납북'을 부인하였지만, 이산가족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론적으로 이산가족은 월경의 자발성여부와 구조적 폭력성에 의해 분류된다. 적대적 경쟁을 핵심원리로 하는 분단체제하에서 이산가족은 항상 현재 몸담고 있는 체제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월경의 맥락을 재구성하며, 민주화나 탈냉전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월경의 맥락이 객관화된다. 냉전분단체제하에서 통용된 월남이나 월북이라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행위와 납북이나 납남이라는 강제적 월경은 실제로는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의 최근의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산가족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초반에 월남가족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2000년에 이르러서야 월북가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월남가족은 한국에서 친체제적 함의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으나 월북자의 잔류가족을 의미하는 '월북가족'은 반체제적 함의를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 은폐되어 있고, 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정구(2002)는 이산가족의 범위를 '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분단이산가족을 일반이산가족, 특수이산가족, 특수유족이산가족으로 세분화하였다. 일반이산가족은 월남자, 월북자, 전쟁고아 등이고, 특수이산가족은 납남자, 납북자, 남파공작원, 북파공작원, 미귀환 군인포로 등이다. 특수 유족이산가족에는 좌익 혐의 유족이산가족, 우익 혐의 유족이산가족 등이 포함된다. 이런 유형분류는 이산이 매우 중층적이고 복잡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일반'과 '특수'라는 용어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약점이 있다.

이산가족을 바라보는 탈냉전적 시각을 김귀옥(2004)이 제시한 바가 있다. 그는 북한에서 이산가족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정리하고, 이산가족에 대한 객관적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산가족 유형론에서 이산의 시점과 지역을 기준으로 도입하여, 한국전쟁 이전과 전쟁 중, 그리고 전쟁 이후라는 시간적 구분을 한 축으로 하고, 월남자와 월북자라는 지역성에 월경의 자발성과 강제성을 다른 한축으로 하는 유형분류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런 분류는 이산의 시간적 역동성과 재구성을 포착하기에 용이하다.

이산가족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국가가 이산가족을 일회적 형성물로 두지 않고, 냉전 분단체제의 형성과정이나 유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이산가족의 가족적 연결망을 국가권력이 감시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문제를 파생시키는 사회적 현상을 나는 '이산복합'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이산가족을 체제선전이나 공작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이것이 야기한 부정적 결과가 가족에게 다시 전가되고 이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 이산복합의 특징이다.

이산복합에는 다양한 유족현상이 포함된다. 이산과 유족현상의 공통의 기원인 전쟁은 피난과 강제동원(병사, 노무자), 납치, 학살을 만들어냈다. 이산가족은 가족구성원들이 모두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것은 전쟁의 일부이다. 가족구성원의 일부가 사망한 경우, 다양한 유가족(고아, 자식을 잃은 부모, 부모를 잃은 자식, 남편을

잃은 전쟁미망인, 부인을 잃은 전쟁 흘아비, 형제를 잃은 형제)이 존재하고, 가족구성원 모두가 사망한 경우 흔적이 없게 된다. 그런 점에서 가족은 전쟁의 흔적을 담는 그릇이다.

한국전쟁의 결과는 전쟁이전과는 다른 경계를 만들어냈다. 3.8선과 휴전선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 확보한 '수복지역'이 있는 반면, '상실지역'이 존재한다. 수복지역은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북한의 통치를 받았던 지역이어서 초기 북한의 정책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남북한 모두에서 유격투쟁이 전개된 산악지역들과 함께 전선이 여러번 바뀌어 민간인의 피해가 컸다. 최근 김영미(2007;2010;2011)나 한모니까(2011) 등은 이런 '수복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구술사를 통하여 '체제선택행위'나 한국전쟁이후의 '국민되기'를 밝혔다.

한국전쟁은 복잡한 내전적 상황을 연출했고, 이에 따라 개인이 속한 여러 가족, 즉 친가와 외가, 또는 친정과 시집이 서로 다른 진영에 속해 있을 수 있다. 또한 전쟁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유족은 단일의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두 차례 이상의 연쇄적 사건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가족 중 한 명이나 다수가 일시에 희생되고 상황이 종료되었다면, 남은 가족은 (단순) 유족이 된다. 그러나 유족들의 일부는 이보다 더 복잡한 사연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가족 중 일부가 월경을 했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국가권력은 그를 찾아내라고 추궁하며, 결국 다시 그를 희생했다면, 남은 가족은 이중 유족이 된다. 부친과 모친을 연쇄적으로 다 잃은 경우가 나타난다.

분단이 어떤 유형이고 이후의 사회의 경로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이산가족의 상황도 달라진다. 냉전 분단하에서 이산가족은 국가의 통제대상이고 때때로 활용대상이 된다. 탈냉전시기에 이르면, 인도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산의 고통을 경감해주는 정책이 도입된다.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초보적 조치들은 생사확인부터 서신교환, 화상상봉, 방문상봉과 제3국 상봉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다. 한국의 경우 이것은 당국 간 협의에 의한 교류와 민간차원의 교류로 구분되는데, 이들 모두 통일부나 정보기구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1985년 당국차원의 생사확인 및 상호방문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후,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민간차원의 교류가 진행되어 왔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당국차원과 민간차원의 교류가 함께 전개되었는데, 방문상봉의 경우 방북상봉이 방남상봉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민간차원의 제3국 상봉도 1,614건이 되었다.

다만 현재까지의 상봉은 일시적 상봉정책이며, 허가를 받지 않은 자유로운 방문과 교류는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 탈북자의 증가와 발전된 통신기술에 따라 국가의 통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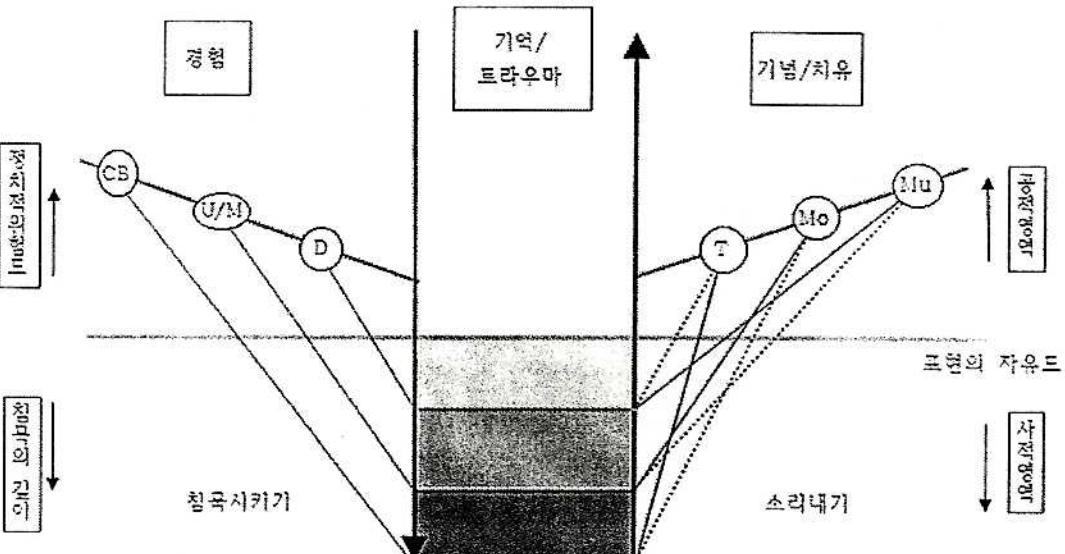
2) 트라우마적 기억의 재현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경험을 표현하고 영속화하려는 욕망이 있으나, 이산가족이나 전쟁희생자, 또는 그 유족들은 그런 욕망이 더 강하다. 이들에게 현실은 역사적 진실과 괴리된 '전도'된 세계이며,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므로 침묵한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면, 강력하게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역사학은 주로 승리한 자의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공식적 기록을 기초로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수자나 희생자, 또는 그 유족들은 공식적 기록이 없이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20세기 후반부터 역사학은 기억연구에 의해 도전을 받거나 구술사를 역사학적 방법의 일부로 인정하여 소수자들의 경험을 조명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구술사를 통한 역사의 정립은 1980년대 후반기 광주항쟁 참여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일본군 위안부 연구, 4·3사건 연구 등으로 이어졌고, 2000년 이후 한국전쟁 연구와 이 기간에 발생한 각종 희생자들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이산가족, 그 중에서도 특수이산가족 연구에 많이 활용되었다.

김귀옥(1999;2004;2008), 조성미(2002), 조은(2006;2008;2011), 이임하(2004;2010), 이수정(2010), 김명희(2010) 등의 연구를 통해 월남 피난민, 월북자 가족, 전쟁 미망인, 피학살자 유족의 경험들이 구술사적 방법으로 재현되었다. 이들은 모두 냉전 분단 체제하에서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일종의 '가사자'였다. 또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수단을 박탈당한 서벌턴의 위치에 있었다. 이들의 경험은 오랫동안 분단·냉전체제의 침묵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림 1] 분단냉전체제하에서의 침묵시키기와 소리내기의 구조

*월경, (영역내) 통일운동, 반독재운동- 증언, 기념비, 박물관(자서전)

냉전·분단체제하에서 가장 정치적 위협이 높은 저항행위는 경계넘기(월경)이다. 여기에는 상대방 지역으로의 월경자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법률적으로 보면,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다. 월북자의 남겨진 가족들은 그 월경을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정치적 위험도를 낮추려고 한다. 영토내에서 분단을 넘어

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일운동은 중간수준의 위험영역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정치적 위험도가 낮은 저항행위는 반독재민주화운동이다. 이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강력한 탄압을 받을 때 이들의 목소리는 침묵당하는데, 그 침묵의 깊이가 다르다. 침묵당하는 시점에서 이들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 트라우마가 된다.²⁾

트라우마적 기억은 공적으로 잘 표출되지 않고 사회의 저변에 축적된다. 침묵은 그 것의 기원이나 성격에 따라 깊이가 다르고, 한 층이 아니라 여러 겹이다. 맨아래에 분단체제가 설정한 경계를 넘는 행위가 높여 있고, 그 다음에 영토내에서의 반체제행위가 높이며, 그 다음에 반정부 행위가 높인다.

침묵은 구조적 강제일 뿐 아니라 자발적 선택 행위일 수 있다. 침묵은 신념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기회구조나 사회적 기회구조가 침묵의 자발적 선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침묵은 트라우마적 기억의 한가지 존재방식이다. 이런 침묵은 일정한 사회적 조건, 즉 정치적 민주화를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가 커지거나 탈냉전으로 인하여 적대적 관계가 완화되면 밖으로 표출된다. 표출의 방식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는 증언이 되며, 중간단계는 기념비 설립, 가장 높은 단계는 자서전(평전)을 쓰거나 기념관을 만드는 것이다. 트라우마적 기억을 표현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치유이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추모의 한가지 방식이다.

증언의 경우, 트라우마 때문에 항상 그것은 표현되는 부분과 표현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별된다. 자신의 기억을 모두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다. 기념비는 증언보다 물질적 자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트라우마적 기억의 재현 매체이지만, 보다 자세하게 말할 수 없다는 전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동원할 수 있다면 기념관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기념비에 대한 욕망을 넘어서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족들은 자세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자서전이나 평전을 고려하게 된다. 가족사나 자서전은 경험의 당사자가 쓸 수도 있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두 사례 모두 유족들이 갖는 부분적 기억이 과장되거나 평화될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기록이나 사진들을 남기기 어려우므로, 회상의 형태로 과거가 재현된다. 그러나 기억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어서 이에 기초한 글쓰기는 오류를 동반하기 쉽다. 그러나 가족사쓰기는 가장 강력한 트라우마의 치유방법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뿐 아니라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3. 정씨가의 이산복합의 경험

1) 지역적 배경

장흥과 보성 일대의 영성 정씨 문중은 장흥 장동 내반마을과 보성 회천의 여러 마

2) 김종균(2011)은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월북자나 납북자 가족, 피난민, 탈북자등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분단트라우마'로 개념화했다.

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들은 1500년을 전후하여 영광에서 장흥 장동으로 이주한 집안이다. 최초 이주자의 증손이 정경달(반곡)형제들로 그들이 문과에 급제하면서 지역의 지배층으로 부상하였다. 정경달의 형제로는 경수, 경달(실제 장자역할, 장동 반곡), 경언(회령 도당), 경영(회령 봉강), 경준(회령 외래), 경명(무과, 회령 외래)에 각각 자리를 잡았다. 장동에 낙재당이 있고, 회령에 벽사정이 있는데, 반곡이 그의 동생 경영과 우애가 깊고 전란시 모친봉양을 맡겨 자주 봉강에 출입하였다고 한다. 1591년 정경달이 정여립 모반사건에 대한 진압공로로 공신(광국원종공신)에 올랐다. 임진왜란 발발 후 선산부사 재임시 그는 금오산 전투에서 형제들과 함께 싸워 승리하였고, 이후 이순신이 그를 종사관으로 청하였다. 정경달은 형제들과 함께 싸우면서 난중일기를 남겼고, 명나라 군대와 접촉하는 접반사로 활약했다. 정씨는 동인(후에 남인)계열에 속했는데, 1630년 다시 공신(선무원종공신)이 되었고, 장동에 사급지를 받았다. 이들을 배향하는 사당인 반계사가 건립되었다. 반계사는 이순신, 임영립, 정경달과 그의 형제들 6인이 배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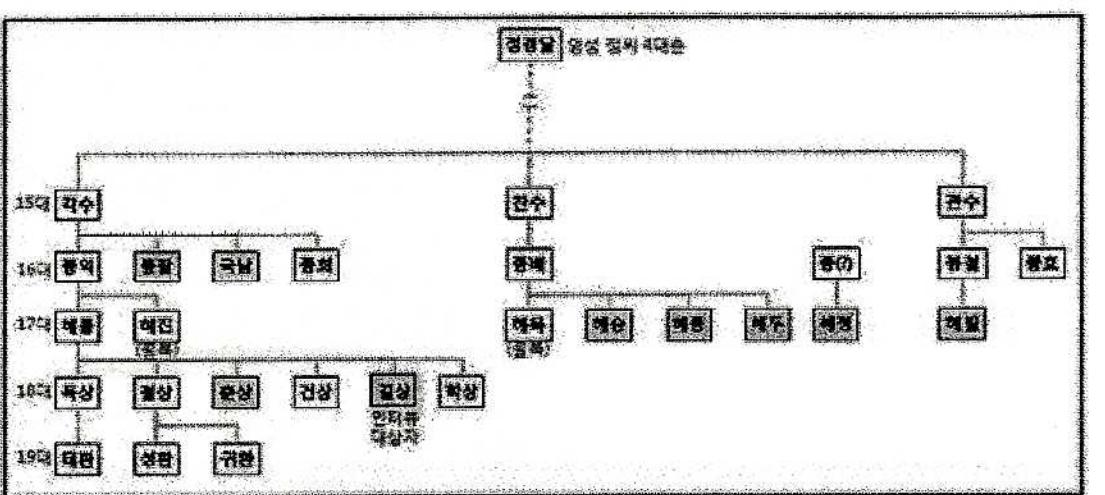
경달 자손이 장동에 세거하였고, 그 이후 3대에 걸쳐 문과 급제자가 나왔으며, 그로부터 4대인 운복 때 가장 가문이 번성하였다. 회령 봉강에 자리잡은 경영은 손이 없어 경달 가문의 윤필을 양자로 입양하여 대를 이었다. 그러므로 회천 봉강의 정해룡, 정해진 형제는 족보상 경영의 후손이나, 혈통상은 경달의 자손이다. 회령은 정운홍 당시에 재산이 흥했다고 한다. 다산 유배시 경달의 글을 모아 반곡집이 출간되었는데, 그의 자손인 윤필이 교정을 보았다. 그로부터 4대 후에 득자 항렬의 서자들이 사당에 불을 지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종손은 부끄럽다고 장흥의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대원군의 사당 철폐시에 반계사도 철폐되었다가 1960년대에 다시 세워졌는데 당시 정일권총리의 도움이 있었다. 정경달의 유물은 1980년대 그의 사당인 반계사에 보관중에 도난당했다. 일부 유물만 개인소장중이어서 도난을 모면했고, 현재 진주박물관에 대여중이다.

일제초기에 장흥일대 정씨의 종손가문에서 특별한 활동을 한 사람은 정진수(1910-45)로, 그는 전남협의회사건에 가담하여 복역하였다. 이와는 달리 장흥 장동의 정씨 동족촌은 약 150호로, 종손은 정옥수이며, 가장 규모가 큰 토착지주로는 화수(子정인, 약 1,000석 지주)가 있었고, 기타 200-300석 지주가 20-30호 있었으며, 다수가 동족내 지주 소작관계의 농민들이었다. 해방후 농지분배를 통해 동족내 지주소작관계는 해소되었다. 6.25때 대체로 이들은 우익편으로 특별한 인물은 없었고, 정종 표만이 좌파 활동을 하였으며, 경찰에 의해 정경식이 희생당했다.

장흥 회령은 보성의 천포와 합병하여 회천이 되고 보성에 속했다. 봉강마을의 정씨 동족촌은 일제 초기에 정각수가 종손으로 그의 형제는 찬수, 관수 등 3형제였다. 정각수는 장흥과 보성 일대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두 명의 나이차가 많은 부인을 두었다.

2) 정해룡의 가족과 활동

정각수는 1933년경 집안 경영권을 그의 손자인 정해룡으로 이양하였다. 정해룡의 부친은 정해룡과 정해진 형제를 낳은 후 일찍 사망하였다. 정해룡은 1913년생으로 장흥과 보성일대에 많은 농지를 상속받았으나 집안의 농업일은 그의 아재인 정종호에게 맡기고 본인은 상업경영에 종사하였다. 정해룡은 청년시기에 김성수가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하자 여기에 기부를 하였으며, 양조장과 인쇄소, 그리고 양정원이라는 서당학교를 윤윤기와 함께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림 2] 정해룡의 가족들

정해룡의 일생은 가족사의 맥락에서는 그의 두 살 아래 동생인 정해진의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지역사 맥락에서는 양정원 설립운영기의 윤윤기의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해방이후 1960년까지 약 15년간의 정치사적 맥락에서는 여운형계(김성숙, 장건상)의 근로인민당 및 혁신계 정치가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는 정각수의 장손으로 근대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한문을 수학하였고, 대신 와세다대학의 통신교육으로 근대 학문을 섭취했다. 그는 자신이 근대학교에서 수학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그의 동생인 정해진을 그의 조부 몰래 근대교육을 받도록 배려했다. 정해진은 1929년 광주고보에 입학하여 1934년 우등으로 졸업한 후, 1934년 경성제대 예과에 입학하였다. 정해진은 광주고보 재학시에 그의 4촌 형인 정해두가 광주학생사건에 연루되어 징역을 살았으므로 그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중학 재학시에는 학생운동에 연관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해룡은 정해진의 경성제대 입학과 함께 근대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듯하다. 1935년 김성수가 보성전문을 설립할 때 그의 조부 명의로 기부하였고, 이후에도 자신의 명의

로 두세차례 기금을 보성전문 도서관 건립비용으로 기부하였다.

정해진은 1934년 경성제대 예과 입학 때, 문과 갑에 소속되었고, 대구고보 출신의 김석형, 경성사범 출신의 전봉덕 등, 군산중 출신의 김수경 등이 같이 있었으며, 문과 을에는 경성일고보 출신의 문홍주와 흥진기, 경성이고보 출신의 이항녕, 청주고보 출신의 김기엽 등이 있었다. 정해진은 대학 재학시에 김석형등 그의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 때마다 보성 집에 놀러 왔다. 정해진의 경성제대 수학과 교유관계가 정해룡으로 하여금 주민계몽과 교육에 투자를 하도록 자극을 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해진이 1937년 경성제대 철학과에 진학한 후, 정해룡은 인근 천포학교의 교사였던 윤윤기(윤승원)와 상의하면서, 그의 토지를 기부하여 1939년 양정원을 설립하고 학교운영의 책임을 윤윤기에게 맡긴 듯하다. 또한 정해룡의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일제말기에 울산철광에 투자하였는데, 마을 청년이 거기에서 일하다가 다쳐 후송된 적이 있다. 그의 유족들은 울산철광투자를 독립자금과 연관시키고 있지만, 그에 관한 정확한 근거는 밝겨되지 않았다.

정해룡의 보성전문학교나 지역사회를 위한 몇차례의 기부와 투자는 주로 농지 처분을 통해 마련되었다. 따라서 그의 농지는 점차 줄어들었다. 특기할만한 것은 정해룡의 식민지 전시체제하 지역유지로서의 '체면유지'활동이다. 1941년 5월의 매일신보 기사에 따르면 1,200원을 일제에 현금하였는데, 이 중 900원은 명백히 병기현납비용 등 친일적 용도였고 나머지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용도에 사용되었다. 이런 현납행위가 양정원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간접비용이었는지, 울산철광 구입을 위한 간접비용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정해진은 1940년 경성제대를 졸업하였다. 그 이후 그는 동경제대 대학원에서 수학하였다고 하고, 일본에서 거주할 때 국제공산당 당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는 평북 강계의 유지집안인 전예준(1918년생)과 1941년 6월에 결혼하였다. 결혼후 전예준은 양정원 교사로 일했다. 그러나 차남인 정훈상이 1943년 12월, 서울 명륜동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1943년경에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하였다는 증언도 있다. 전시체제 막바지에 조선의 최고 엘리트에 속했던 사람이 공식적 영역에서 활동하지 않은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정해룡은 양정원 운영기인 1940년대 초반 만주여행을 한두차례 하였는데, 그의 행선지와 여행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만주여행에서 돌아올 때, 정해룡은 최천과 함께 일경에 의해 체포되어 구금된 적이 있었다. 최천과 정해룡이 어떻게 알게 된 것이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최천은 정해룡의 일생에서 매우 위기에 처했을 때 몇차례 구명해준 중요한 인물이다. 최천은 1900년 경남 통영 출신으로, 독학으로 한문을 수학했으며, 1919년 3.1운동에 참가하여 수감되었고, 1927년 4월, 경남 도평의원으로 활동한 친일파를 고발하는 통영시대회를 추진하다가 검거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는 동아일보 통영지국장, 신간회 통영지부장 겸 중앙위원으로 활동했다. 정해룡이 김성수와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아마도 최천과의 관계도 동아일보나 보성전문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

해방직후에 정해룡은 회천면 건국준비위원회와 그에 뒤이은 인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였다. 특히 8월 15일 오후에 회천면 봉안전(또는 신사)을 파괴한 사건은 기록될만하다. 이 사건으로 일본경찰과 대치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일본인들은 그에게 무사히 귀환하도록 해줄 것을 부탁했다. 1946년, 양정원은 폐쇄되고, 회천 서초등학교로 흡수되었다. 이 학교의 설립시기 자료를 보면 정해룡의 물질적 지원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정해룡은 1947년 상경하여 여운형이 주도하는 근로인민당의 재정부장으로 활동하였고, 여운형 사망이후에 회천으로 다시 내려왔다. 정해진은 해방 당시에는 보성에 있었으며, 1945년 가을에 서울로 가서 활동을 재개하였다.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정해진이 김선우와 함께 인천 경찰서에 투옥되었는데, 당시 인천 경찰서장인 최천이 정해진과 김선우를 풀어주었다고 한다. 김선우는 한국전쟁기에 전남도당 유격대 사령관을 했지만, 보성으로 귀향하기 전에는 정해진 집에 투숙하고 있었다. 김선우의 이념화에 정해진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해진은 남로당계열 인사들에 의해 1948-49년 무렵에 당권을 정지당하여 귀향해 있었으며, 그 후 당권정지가 풀려 다시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1950년 2월 서대문 형무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인민군의 서울 전령시에 출옥하여 서울시 인민위원회의 문화선전부에서 고위 간부를 지냈고, 인천시 인민위원회의 책임을 맡았다고 한다.

당시 정해룡은 보성군 회천면에 본가를 두고, 별교읍 회정리에서 둘째 부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별교양조장을 운영하였다. 그의 둘째 부인은 제수인 정해진의 부인의 여화여전 친구였다. 1949년 보도연맹 조직시에 정해룡과 윤윤기가 이에 가입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윤윤기는 정해룡이 운영하던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정해룡은 1950년 5.30 선거에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하였으나 낙선되었다. 곧 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1950년 7월, 보도연맹원 검속 시에 보성에서는 총 3차례 소집이 있었는데, 3차 소집 때, 정회필과 윤윤기가 체포되었고, 희생당했다. 정해룡은 인민군 점령하에서 면인민위원회로 활동하였고, 그의 가족들도 좌익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민군이 후퇴하자 그도 잠시 입산하였으나, 순천지구 토벌대 사령관이었던 최천이 그를 방면해주었다. 정해룡은 이 때문에 1950년 10월, 우익단체인 구국청년총연맹 보성군지부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천은 해방 후에는 한국민주당 발기인, 경남 반탁투위 위원장을 거쳐, 인천경찰서장, 제주도 경찰청장, 여순사건 때 경비사령관으로 활동했고, 한국전쟁기에는 경남 경찰국장으로 활동했으며, 1954년 제3대 국회에서 통영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4대, 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정해진은 1950년 9.28 수복시에 서울에 있다가 보성에 그의 장남과 차남을 남겨둔 채 월북하였다. 그의 북한행은 이념에 따른 체제선택행위로 보이지만, 그의 처가가 평북 강계였다는 점도 작용한 듯하다. 이 때부터 정해룡과 정해진은 형제 이산가족이 되었으며, 정해진의 가족은 부자 이산가족이 되었다. 윤윤기의 가족은 전쟁 유족이 되었다. 윤윤기가 희생된 후 그의 가족은 매우 어렵게 살았으며, 이 때문에 종종 정해

룡에게 도움을 청했다.

정해룡은 1957년 근로인민당 재건 사건으로 장건상, 김성숙 등과 함께 체포되어 투옥되었는데, 나중에 무죄로 풀려나왔다. 그는 4월혁명이후 혁신계 활동을 하면서, 1960년 7월 29일 선거에서 사회대중당으로 입후보하였는데, 낙선하였다.³⁾ 1961년 3월에는 이동화, 송남현, 김성숙등 구 진보당계열의 인사들이 주도한 통일사회당 전남도당의 부위원장에 취임하여 2대 악법반대투쟁과 중립화 통일 전남도연맹 결성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5월 16일의 군사 쿠데타로 인해 활동이 정지되고,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전남 혁신계 인사들이 일망 탄진되었을 때, 정해룡도 투옥되었다가 방면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65년, 정해진이 남파되어 회천 자택에서 정해룡을 만났으며, 정해룡은 자신의 아들인 정춘상을 대동하고 월북하도록 허락했다. 정춘상은 일주 후 다시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김일성의 편지를 정해룡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내용은 남한의 혁명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정해룡에게는 북한으로 갔던 그의 동생이 15년만에 자신의 집에 나타나 자신을 만나고 더구나 '간첩행위'를 요청했다는 것은 이념을 떠나 엄청난 심리적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해룡은 적극적인 '간첩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1967년 정해진이 다시 남파되어 정해룡을 만났고,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하였거나 재촉하였을 것이다. 정해진은 이 때에 그의 형 외에 정종희, 정종호, 정춘상 등과 만났다.

정해진의 남파가 이루어진 1965년부터 1967년의 기간에 북한은 대남정책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던 시기였다. 1968년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그리고 울진 삼척지구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북한은 대남정책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숙청하고 정책을 전환한다.

이런 상황에서 1969년 8월, 정해진의 차남인 정훈상이 군 복무중 탈영하여 일본에 밀항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는 남한에서 3선개헌 문제로 정치적으로 복잡했던 시기이다. 그는 중앙대 수학 중 입대했으며, 일본에서 북한의 부친에게 보내줄 것을 탄원하였다.⁴⁾ 일본정부는 그를 남한으로 송환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고, 국제적인 재판으로 진행되었다. 조총련에서 그를 변호하였고, 결국 북한행이 성사되었다.⁵⁾ 정훈상이 일본을 떠날 때 하네다 공항에서 손을 흔드는 장면이 중계방송되었고, 모스크바와 북경을 거쳐 기차로 평양에 도착하였으며, 평양 군중 환영대회가 열리는 장면도 방송되었다고 한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정해진이 남파되어 그의 고향집에 왔을 때 그의 두 아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겠지만, 그들에

3) 이 때 보성의 보천주조장을 운영했던 염근수가 정치자금을 비밀리에 대주었다고 한다.

4) 가족들은 당시 주일대사가 정해진의 친구였던 이호라고 기억하고 있다. 정훈상이 그의 부친의 친구인 이호에게 자신의 구명을 요청하였다고 생각한다. 이호는 1914년 경북 영천 출생으로, 1940년 동경제대 법학부를 졸업했으며, 1968년부터 70년까지 법무부 장관, 1971년부터 74년까지 주일 대사를 지냈다.

5) 조총련은 1969년 10월, '청년 정훈상에 관계된 자료'를 발간하였다. 이 자료에 정훈상이 밝힌 가족배경과 월북하는 이유가 적혀 있다. 이 자료는 가지무라 히데키 교수가 동경의 코리아 NGO센터에 기증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따라서 정훈상은 자신의 부친이 고향을 다녀간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 정해룡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알려진 대로 우연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아들인 정춘상의 월북 및 귀환, 그의 조카인 정훈상의 월북에 따른 심리적 부담과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정해진은 정훈상 월북사건으로 언론에 노출되어 더 이상 대남사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역사연구 기관으로 옮겨 일하다가 1999년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4. 탈냉전 분단하에서의 유족들의 부모 회상

1) 정해룡 자녀들의 부친회상과 기념

가족사와 지역사를 결합하여 한국의 현대사의 결을 이해하려고 시도할 때, 그 출발점은 특정 사건이나 텍스트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 사건이나 텍스트는 이에 관계하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정해룡의 추모비도 그런 텍스트의 하나이다.

정해룡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그를 추모하기 시작한 것은 그의 사망 후 2주년이 되던 1971년 11월이다. 이들은 추모비를 세우기로 하고 '우국지사 정해룡 추모비'라고 새긴 후 이를 건립하려고 했으나 지역경찰은 이 추모비에 새긴 '우국지사'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하여 이를 세우지 못하게 하였다. 유족들은 이 추모비를 세우지 못하고 땅에 묻어 두었다.

이 추모비 사건 후 정해룡의 유족들은 침묵의 세월을 살았다. 그의 가족들은 광주 항쟁이후인 1980년 11월 이 추모비를 다시 세우려고 하였으나 공교롭게도 가족 전체에 닥친 대사건으로 인하여 다시 실패하였다. 이 추모비는 1992년 3월에 비로소 세워졌다.

1980년 11월 11일 보성 회천 동초등학교 교사였던 정길상은 수업중에 안기부 직원 4명에 의해 체포되었다. 교감실에서 수갑을 채워 광주 서부경찰서로 이송하였고, 서부 경찰서에서 일주일간 조사를 받은 후에 서울 남산 안기부 지하실로 끌려가서 한달간 수사를 받고, 서대문 구치소로 옮겨졌다. 일심재판에서 무기를 구형받고, 12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고등법원에서 7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와 함께 그의 형인 정춘상과 종조부인 정종호, 정종희 등 수십명이 체포되었고, 이듬해 1월에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보성가족간첩단 사건이 발표되었다. 1980년 가을부터 1984년경까지 경찰과 안기부는 간첩사건을 연이어 발표하였는데, 이 사건도 그 중의 하나였다. 이 사건은 실제 행위가 일어난지 13-15년이 지난 뒤에 정보당국에 의해 포착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정춘상은 1985(86)년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정길상은 7년 복역후 1988년, 정종희는 8년 복역후 1989년에 석방되었다. 한국의 해방 후

참고문헌

- 강정구, 「해방 후 월남인의 월남동기와 계급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풀빛, 1992.
- 강정구, 「분단이산가족의 현황과 문제해결방향」,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1』, 사람생각, 2002.
- 강정구,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 강준만·김환표, 『희생양과 죄의식: 대한민국 반공의 역사』, 개마고원, 2004.
- 김귀옥,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밀으로부터의 월남민연구』, 서울대 출판부, 2002.
- 김귀옥 외, 『전쟁의 기억 냉전의 구술』, 선인, 2008.
- 김귀옥, 「글로벌 시대 한국 이산가족의 정체성과 새로운 가능성」, 『사회와 역사』 Vol.81, 2009.
- 김귀옥, 「냉전시대의 경계에 선 사람들」, 『황해문화』Vol.67, 2010.
- 김귀옥,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 이산가족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역사비평사, 2004.
- 김귀옥, 「이산가족의 범주화와 공동체형성방안」, 『역사문제연구』19, 2008.
-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 김명희, 「한국의 국민형성과 '가족주의'의 정치적 재생산: 한국전쟁 좌익 관련 유가족들의 생애체험 및 정치사회화 과정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Vol.21, 2009.
- 김영미, 「구술과 가장문서를 통해서 본 양반가 4대의 가족이야기-식민지 근대의 경험과 가족문화의 변화」, 『역사비평』2007.5
- 김영미, 「수복지역 양양주민들의 한국전쟁경험-어느 한약방주인의 생애와 선택」, 『역사비평』2010.11.
- 김영미, 「초등학교 교사가 된 '흰 패'의 딸들-구술을 통해서 본 38이북(양양, 속초) 주민사회와 교육개혁」, 『진단학보』 2011.4
- 김종군, 「구술을 통해 본 분단 트라우마의 실체」, 『통일인문학논총』51, 2011.
- 김현경, 「고문폭력 생존자가 반추한 고문의 고통체험: 군사정권시대 간첩혐의 희생자 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42-2, 2011.
- 김현선, 「전쟁미망인의 빼앗긴 남편과 사랑, 결혼이야기」, 『구술사연구』2-1, 2011.
-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 대한적십자사」, 1976;1977;1986.
-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찾기 60년」, 대한적십자사, 2005.
- 조철, 『죽음의 세월』, 성봉각, 1965.
- 이태호·신경완, 「압록강변의 겨울: 납북요인들의 삶과 통일의 한」, 다섯수레, 1991.
- 통일부, 「남북이산가족교류 추진형황과 평가-이산가족교류 백서」, 통일부, 2001.
- 통일연구원, 「이산가족문제 해결방안」, 통일연구원, 2001.
- 정희상, 「월북자 가족들의 삶과 한」, 『말』, 1991년 3월호.
- 박병엽 구술(유영구-정창현 역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 전 노동당 고위 간부가 겪은 건국비화」, 선인, 2010.
- 박병엽 구술(유영구-정창현 역음), 「김일성과 박현영, 그리고 여운형: 전 노동당 간부가 본 비밀회동」, 선인, 2010.
- 박완서, 「문학의 뿌리를 말하다」,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베개, 2010.
- 서은성, 「이산가족의 의미분석」,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선경식, 「학산 윤윤기: 누가 그의 이름을 지웠는가」, 한길사, 2007.